

결과 보고서

공익활동가 공제 대출사업 개선 방안

2025년 2월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대출사업 개선 연구 TF

제 출 문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이사장 귀하

이 보고서를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대출사업 개선 연구 TF』 결과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5년 2월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대출사업 개선 연구 TF

TF 참여자

TF위원	장지연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상임이사) 안준상 ((사)함께만드는세상 사회연대은행 상임이사) 유유미 (전국주민협동연합회 상임이사) 최솔비 (전국주민협동연합회 운영팀장) 류홍변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상임이사)
실무지원	김경민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경영처장) 박소영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경영팀장)

이 보고서는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대출사업 개선 연구 TF가 수행한 연구 결과를 수록한 것입니다. 연구 내용은 TF 위원진의 의견으로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의 공식적인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요 약

개요

- 2024년 5월부터 2025년 2월까지 10개월 간 「동행 대출사업 개선 연구 TF」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정리해 보고서로 제출함
 -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은 2016년 시범사업으로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해 2024년 말 누적 대출액 약 45억 원 규모로 성장
 - 자금의 공급 및 회수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과제를 정리해 반영하고, 2023년 정립된 비전·미션 및 사업전략과 정합성을 점검·보완하려는 목적으로 TF를 구성해 운영
 - (목적) **공익활동가들의 특성에 부합하는** 대출사업으로 정비, 관리 효율화 및 부실 감소 등을 통한 대출사업 **지속가능성 확보**
 - (고려 사항) 조합원들이 만드는 자조금융이자 공익활동가 금융안전망 지원사업인 동행 대출사업의 **혼합적 성격**을 이해하고 접근
 - (과업 범위) ▶ 동행 대출사업 성격 정리, ▶ 대출 프로그램 설계 개선 방안, ▶ 운영 체계 개선 방안, ▶ 채원마련 및 성과관리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과업으로 작업
 - (연구 방법) 동행 대출 자료 및 프로세스 분석, TF 내부 토의,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의 방법으로 진행
- 동행은 그간 재원과 대상에 따라 내용을 달리하여 5가지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이 중 2개 프로그램은 종료되어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3개임

[동행 대출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상	재원	운영방식	상태
긴급자금대출 시범사업(16-19)	조합원	차입금	위탁/협력	종료/상환관리
소액대출(17-)	조합원	출자금	자체운영	지속
공공상생연대 청년안전망기금(18-)	조합원 청년	출연금	위탁/협력	지속
중장년활동가 든든기금(20-)	조합원 중장년	지원금	위탁/협력	지속
비영리대출-단체/개인 (20-)	조합원 + 비조합원 포함	차입금	위탁/협력	종료/상환관리

사업 방향 검토 - 1. 재원의 특성

- 동행에서 대출 프로그램을 위해 활용한 자원은 출자금, 출연금, 차입금, 지원금 등 4가지인데, 각 재원마다 제약조건이 달라 프로그램 설계에 영향을 미침
 - 재원에 따라 ▶ 손실 허용 정도, ▶ 이자율 한도, ▶ 내용구성 재량에서 차이가 존재하여, 재원의 성격은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침
 - 대출 재원은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사회적 금융 스펙트럼 상에 고유한 위치를 갖게 되고, 이로 인해 융자 모델이 달라짐
 - 출자금이나 차입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손실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운용해야 하는데, 이자율 제약까지 존재하는 경우 엄격한 대상자 선별 등 운영 경직성 강화
 - 출연금과 지원금은 사회적 가치를 선명하게 한다면 손실 처리가 가능하지만, 출자금·차입금 대비 자금의 규모가 크지 않음. 상환재원 활용에 대한 합의가 중요

[대출 재원에 따른 융자 모델]

구분	자금의 성격	운영 특징
출자금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지만, 일반적으로 출자금 반환을 염두에 두고 손실을 회피	기본적으로 원금 보존을 목적으로 운용
출연금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조성·운영되는 자금이므로 이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되, 기금의 지속가능성 고려	명확한 사회적 가치 추구, 손실 감수 가능
지원금	사회적 가치 우선 추구 측면에서 출연금과 같지만, 기본적으로 소멸성 자금으로 설계	보통 이자율이나 대상을 제한하는 등 제약이 부과됨, 상환 재원 활용 방안을 사전에 합의하는 것이 중요
차입금	통상 원금 상환 의무가 있으면서 공익 목적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자금, 손실 대책으로 자부담금 매칭 요구	일반적으로 손실이 허용되지 않으며, 정책성 자금의 경우 낮은 이자율을 요구. 규모화 차원에서 활용 가능

- 외부 조달 재원일수록
 - ① 낮은 이자율(비영리성 강조)
 - ② 전문기관을 통한 위탁/협력 방식 운영(체계적 운영 보장)
 - ③ 테마 부여(시의성 부각)의 특징을 보임

- 지속가능성과 운영·관리의 유연함을 고려하면 출자금과 출연금을 ‘기본 재원’으로, 지원금과 차입금을 ‘추가 재원’으로 간주하는 것이 적절함
 - 각 재원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기본 프로그램’과 ‘특별 프로그램’으로 구분
 - 출자금/출연금을 활용하는 ‘기본 프로그램’ 중심으로 자체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자체적으로 운영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

[대출 재원 및 프로그램 관리 체계(안)]

구분	해당 재원	대출 프로그램	운영 방식
기본 재원	출자금(조합원 출자금) 출연금(기부금)	기본 프로그램 구성	자체 운영 (핵심 구성 중심)
추가 재원	지원금(지원사업비) 차입금(무이자 용자)	특별 프로그램 구성 + 기본 상품 보완	파트너십으로 운영 (프로그램 다양성 확보)

- 기본 프로그램은 재원이 사업 운영 과정에서 고갈되지 않고 지속가능성을 갖출 수 있도록 균형 상태로 관리
 - 이를 위해서는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규모의 수입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손실충당액을 상쇄하는 수준의 이자수입 확보가 필수적
 - (비용) 손실충당액, 운영비; (수입) 이자수입, 기타 수수료
 - ☞ 기 발생한 손실 규모와 추이를 반영해 이자율 상향 조치 필요
- 동행 대출의 효과성 증대를 위해서는 기본 프로그램에 대한 조합원 관여도를 높이고 조합원 중심성을 강화해 출자금 규모를 확대해 가는 접근이 필요
 - 대출은 지원사업 대비 장기적이고 사후관리가 수반되는 점을 고려해, 조합활동 경험이 축적된 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대출을 목적으로 하는 회원가입은 바람직하지 않음
 - ☞ 기본 프로그램의 대출사업 신청자격 강화 필요 (조합 활동기간 중심)

사업 방향 검토 - 2. 유관 프로그램 비교

- 동행 대출 사업은 ‘신용소액대출’이라는 면에서 마이크로크레디트, 서민금융과 유사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이자 노동복지’라는 점에서 공제대출(적립형 공제), 근로복지기금 대출과 유사함
 - 4가지 유관 프로그램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진 채 관여하는 주체, 제도적 기반에 따라 각기 다른 속도와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음
 - (사각지대 자금 공급) 마이크로크레디트와 서민금융은 소액신용대출이라는 점에서 같지만, 전자는 제3섹터가 주도하고 양보다 질 중심, 사례 중심이라면, 후자는 금융권과 정부가 협력해 이를 제도화한 것으로 시스템적이고 규모화된 해법
 - (사회안전망 & 복지 확충) 공제대출과 노동복지 대출은 노동자의 사회안전망과 복지 확충이라는 면에서는 유사하지만, 공제는 당사자 간 상호성에 기반한 결사체 중심이라면 노동복지는 노-사 간 협약의 결과로 운영되는 것이 차이점

구분	마이크로 크레디트	서민금융 (소액신용대출)	공제대출 (적립형공제)	노동복지 (근로복지기금)
목적	저소득층 소득창출기반 강화 지원 빈곤퇴치, 경제발전, 소득분배개선 추구	1금융권에서 신용대출 등 자금 조달이 어려운 서민을 대상으로 생계비, 창업, 자영업 운영, 대환자금 등의 목적에 필요한 금융 공급	공동체 구성원들이 일정한 금액을 각출하여 서로 협력하여 위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분담하고 해결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 목적의 프로그램 운영
대상	저소득 영세 자영업자, 창업과 소규모기업 운영 지원	일정수준 이하 소득, 신용평점 혹은 중위소득을 가지고 있는 서민 중 금융 수요자	회원 및 조합원	노동자
서비스	· 자금 공급과 함께 경영 관련 기술/지원 제공 (비금융 지원 병행)	· 정책금융 성격의 금융 공급 · 금융복지 상담 병행	· 적립형 공제를 통한 목돈마련 지원 · 생활자금 대출	· 주택자금, 장학금 대출 · 재난구호금, 생활원조 등

- 동행 대출은 외부자금(기부금)에 의한 소규모 무담보 대출 서비스, 즉 마이크로크레디트로 시작되었으나, ‘자조·자립’이라는 핵심 가치에 따라 향후 공제대출의 성격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
 - 향후 동행의 초기 지향점과 협동조합으로서의 자조 조직 특성을 반영하여 마이크로크레디트와 공제회의 성격을 동시에 지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각각에 맞는 역량을 고르게 갖추 필요가 있음

- **(마이크로크레디트 측면)** 소액신용대출은 민간 주도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으로 시작됐지만, 정부와 은행권이 서민금융 정책으로 제도화하고 규모화하였음
 - 국내 마이크로크레디트의 낮은 이자율을 고수하는 정책은 ①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흡수하지 못해 수행기관의 존립에 위협이 되고, ② 자금 공급자에 대한 의존도를 지속적으로 심화시키며, ③ 사업의 유연성을 떨어뜨려 수혜자 범위를 제약하고 사회가치 창출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는 것으로 관찰됨
 - 동행의 경우 비록 낮은 이자율에 대한 조합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지만,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관계금융의 특성을 살린 신속하고 간편한 심사, ▷만기 조정 등 관료주의에서 벗어난 유연한 운영, ▷금융소비에 대한 종합적 진단과 처방 등으로 소구점을 옮겨가면서 이자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승시키는 접근이 필요

- **(공제대출 측면)** 국내에서 공제는 법정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소득의 일부를 활용해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는 자금을 비축하도록 지원하고, 이 자원을 공유(pooling)함으로써 위험 대응력을 높이려는 접근으로 널리 활용됨
 - 적립형 공제를 통해 자금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긴급한 자금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개인이 비축한 자금을 털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 기본 구조
 - 조합원 출자금에 기반한 소액대출 외에 적립형 공제 등을 도입하여, 공제조직에 어울리는 대출 사업으로 발전시켜 가는 것이 바람직

- **(동행 대출의 포지션)** 금융 취약계층 대상 다양한 대출 프로그램의 활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합원의 대출 수요를 건전한 방향으로 형성하고 해소하기 위한 촉매제로 동행 대출의 정체성과 포지션 정립
 - 동행 대출 신청자의 상당수가 카드론, 서민금융 등 다중채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수요에 대해 동행 자체 프로그램만으로 실효성 있게 대응하기 어려움
 - 현재 보유한 대출 재원이 제한적이므로, 당분간 동행 대출은 “소액신용대출”로서 정체성을 더욱 확실히 하고 개인별 대출 한도와 용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소액신용대출로서 유용성을 높이려면, “소액” 자금 수요가 발생했을 때 동행 대출을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주기를 단축하고 제대로 알리는 것이 필요함
 - 다중 채무자의 경우에는 개인의 금융 생활에 대한 상담과 진단, 처방이 선행되고, 활용 가능한 대출 프로그램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면서 개인 채무에 대한 조정과 개선을 원활하게 하는 용도로 동행 대출이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 (금융상담, 신용회복, 서민금융 등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원)

개선 방안 - 1. 대출 프로그램 설계 개선

- 대상(신청자격), 용도, 신청주기, 대출한도, 만기, 이자율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그간의 운영 경험과 동행 대출의 향후 성격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제시함

[동행 대출 프로그램 설계 개선안]

구분		현재	개선안
가. 신청자격 (조합가입기간)	소액	24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청년	2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중장년	3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나. 용도		학자금대출, 고금리대출, 주거비, 생계비	고금리대출, 주거비, 생계비
다. 신청주기		연 2회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소액대출은 분기별 1회 (연 4회) 진행
라. 신청금액	소액	1천만원	1인당 최고 1천만원 1회당 최고 5백만원
	청년	2천만원	1인당 최고 1천만원
	중장년	1천만원	현행 유지
마. 금리	소액	연 3%	- 상환기간, 대출규모, 시중금리, 운영비 등을 감안하여 이자율 3% 로 상향조정하여 적용 * 이자수입은 대손충당금 적립과 운영비로 사용처 제한하여 관리
	청년	연 1%	
	중장년	연 1%	
바. 상환기간	소액	36개월 이내	- 상환기간은 관리비용을 고려하여 단기간(36개월)으로 조정
	청년	60개월 이내	
	중장년	36개월 이내	
사. 성실 상환 유도		해당사항 없음	- 최초 금리를 3%로 하더라도 성실 상환 시 2%로 감면 조치 - 대출 연체중인 조합원은 다른 지원사업 신청자격 제한

개선 방안 - 2. 운영체제 개선

- 신청서류, 심사 프로세스, 약정 및 교육, 사후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동행 대출사업 운영체제 개선방향 종합]

구분		기존	개선안
서류 접수	신청서식	기본 인적사항, 신청용도, 부채, 상환계획 등	- 신청자 가계 월소득과 월지출 작성 추가
	제출서류 목록	신청서식 증빙자료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변경 - 개인신용보고서 추가
심사	사무처 서류검토	기본요건, 미비서류 보완	- 신청서류와 제출서류 동일여부 확인, 적합성 검토 - 재무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반영한 평가표 활용하여 1차 검토
	심사위원회	서류검토로 대출 여부 및 한도 결정 (100% 정성평가)	- 정량 및 정성평가 포함된 평가표로 서류심사 - 대면심사 추가
약정 및 교육	약정서	대출기간, 상환관리 등 기본 약정 내용으로 구성	- 특약 삽입 : 공익활동 중단으로 인한 조합원 자격 상실시 약정 해지 요건
	교육내용	조합, 기금, 상환 안내	- 호혜금융 교육내용 강조 - 재무관리 교육내용 추가
관리	상환관리	월 1회 상환 안내	- 전담 인력 배정을 통한 밀착 관리 - 도덕적 해이 등 (법적) 대응 조치
	부실관리	-	- 대손, 관리중단 채권 등 조치방향에 대한 논의 구조 마련 - 대손 목표비율 설정 및 후속조치
	기타 금융 안전망 지원	-	- 홈페이지 금융 정보 게시 - 다중금융부채자에게 채무조정 및 상담 연계

개선 방안 - 3. 재원마련 및 성과관리 개선

□ 자체재원 확대 방안

- 소액대출 확대를 위한 출자금 증액
- 적립형 공제 대출사업 추진

□ 외부재원 개발 및 활용 방안

- 중장년공익활동가 대출사업을 위한 재원 정리 및 확대 방안 마련
- 동행 대출사업을 위한 외부기금 활용 원칙 마련
 - 향후 출연금, 차입금 등 외부기금 확보 시 협의 기준 등을 마련하여 기금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기본제안서를 마련하여 신규 기금 확대를 추진하는 등 동행의 조직적 목표와 추진방안 정립

[외부재원 개발 시 고려사항]

기금 구분	협의내용		
	사업기간	대손분담	비고
출연금	- 최대 10년 10년 이후는 동행 귀속	- 5년 이내 5% - 10년 후 10%	- 운영비 협의 필요
차입금	- 차입금 상환종료기간 - 사업기간 종료 합의	- 대손분담금 협의 필요	- 기관 및 기금에 따라 달라짐 - 운영비 협의 필요
금융기관 차입(*)	- 차입금 상환종료기간	- 해당없음	- 이자 + 대손예상금을 별도 기부금으로 확보

□ 성과관리는 운영 원칙을 고려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동행 대출의 운영 원칙은 다음과 같음

- 동행의 대출프로그램은 공익활동가들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공익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창출하기 위한 지원사업
- 대출 프로그램에 참여한 공익활동가들의 상환액을 다른 공익활동가들에게 재대출함으로써 순환대출 구조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연대의식 및 상호 책임성 제고
- 사회적으로 낮은 급여계층에 속하는 공익활동가들이 기존 금융권의 대출을 받기 어려운 조건에서 동행의 대출프로그램을 찾는 점을 고려하여, 신청을 간소화하고

선정과정에서 상환능력 등의 재무적 가치 뿐 아니라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주요하게 판단하여 진행

- 대출금 상환 안내 시 조합조직의 소속원으로서 관계와 신뢰, 공익활동가 스스로의 자존감을 존중하고 배려

□ 이를 반영해 동행 대출사업의 성과관리 요소 사업성과, 효과성, 프로그램 추진 성과 등 3가지 분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함

[동행 대출프로그램 성과관리 요소]

구분	항목	평가요소 (*)	평가방법
사업성과	경제적 가치 환산	금리 저감 효과	화폐화 계산
효과성	개인적 차원	공익활동 집중도	설문조사
		경제생활의 안정감 향상	
		심리적 스트레스 저감	
	사회적 차원	공익활동가 연대의식 향상	설문조사
공익활동가 소속감, 책임성 향상			
공익활동가 자존감 유지			
공익활동가로서 활동 지속			
프로그램 추진성과	순환대출 구조	상환비율 증가	자료 분석
	대출선정 기준	사회적 가치 판단 유지	
	프로그램 지속가능성	운영의 안정성 확보	
	참여자 만족도	사업추진 과정의 만족도	설문조사

* 평가요소에 따른 세부 평가기준, 설문내용 등은 각 대출프로그램의 특성에 맞게 구성

□ 효과적인 성과 관리를 위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음

- 대출프로그램 설계 시 평가요소, 평가항목, 평가시기 등을 명확히 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할 수 있도록 추진
- 대출프로그램별로 연 단위 평가 진행 및 종료시점의 최종평가 진행
 - 팩트시트를 구성하여 분기별로 데이터 업데이트 관리
- 참여자들의 대출 전후 상황변화 측정이 가능하도록 설문조사 및 FGI를 병행하여 평가 보완

목 차

제1장. 서론	1
1. 배경과 목적	1
2. 동행 대출사업 연구TF 추진 경과	3
3. 동행 대출사업 개요	5
4. 고려 사항	8
제2장. 사업 방향 검토	9
1. 자원별 운영 제약	9
2. 대출 프로그램 성과 모델	19
제3장. 대출 프로그램 개선 방안	36
1. 대출 프로그램별 현황	36
2. 대출 프로그램 설계 개선 방향	42
제4장. 운영체계 개선 방향	51
1. 신청서류	51
2. 심사	54
3. 약정 및 교육	56
4. 사후 관리	57
제5장. 자원마련 및 성과관리 방안	61
1. 자원마련 방안	61
2. 성과관리 방안	63
제6장. 결론	66
붙임 1. 동행 대출심사 매뉴얼	69
붙임 2. 동행 대출사업 상환관리업무 매뉴얼	77
붙임 3. 동행 대출사업 규정 개정방향	91

표 차례

표 1. 연구 범위	2
표 2. TF 회의 추진 경과	3
표 3. 동행 대출프로그램 종합표	5
표 4. 동행 대출사업 재원구조	6
표 5. 대출 재원의 유형	9
표 6. 대출 재원 중심 프로그램 검토	16
표 7. 대출 재원 구분	17
표 8. 대출 프로그램 구분	17
표 9. 대출 재원 및 프로그램 관리 체계(안)	18
표 10. 서민금융진흥원 대표 정책금융 상품	24
표 11. 연대별·공제유형별 공제사업 신설 추이	25
표 12. 공제상품 예시 - 주민협동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우리함께	26
표 13. 공제상품 예시 - 노동공제연합 사단법인 풀빵	27
표 14. 재원출처를 기준으로 구분한 복지 유형	27
표 15. 사내·공동 근로복지기금 현황 (2022년 기준)	29
표 16. 유관 프로그램 비교	30
표 17. 소액대출 신청·선정 현황	36
표 18. 청년공익활동가 안전망기금 대출 신청·선정 현황	37
표 19. 중장년 활동가 안전망 든든기금 대출 신청·선정 현황	38
표 20. 긴급자금 대출 시범사업 신청·선정 현황	39
표 21. 코로나19 위기극복 특별 융자 신청·선정 현황	40
표 22. 동행 대출프로그램 총괄표	41
표 23. 동행 프로그램별 대출 신청자격	42
표 24. 동행 대출프로그램 금리	46
표 25. 동행 대출프로그램 금리 및 상환기간	49
표 26. 동행 대출 프로그램 설계 개선안 종합	50
표 27. 동행 대출사업 심사기준표(안)	60
표 28. 동행 대출사업 운영체계 개선방향 종합	54
표 29. 동행 대출사업을 위한 외부기금 활용 시 협의기준	62
표 30. 동행 대출프로그램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요소	64

그림 차례

그림 1.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비전체계도	1
그림 2. 동행 사무처 업무 구조	7
그림 3. 동행 대출 진행 절차	7
그림 4. 대출사업 개선TF 활동 고려사항	8
그림 5. 사회적 금융 스펙트럼	10
그림 6. 대출 재원별 사회적 금융 스펙트럼 상 위치	11
그림 7. 재원에 따른 운영 모델 - 조합원 출자금	12
그림 8. 재원에 따른 운영 모델 - 출연금	13
그림 9. 재원에 따른 운영 모델 - 지원금	14
그림 10. 재원에 따른 운영 모델 - 차입금	15
그림 11. 국내 서민금융 현황	23
그림 12. 유관 프로그램 분야별 발전 추이	33
그림 13. 동행 대출 선정 및 사후관리 체계	51
그림 14. 동행 대출사업 신청서 양식	52
그림 15. 동행 대출사업 심사표 (심사위원회 사용)	55

제1장. 서론

1. 배경과 목적

□ 배경

-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은 “공익활동가의 지속가능한 활동과 존중받는 삶을 위한 안전망”을 추구하며 2013년 설립됨
- 2023년 창립 10주년을 맞아 동행의 미션과 비전, 사업 전략을 정비하는 비전체계수립TF를 운영하고, 이해관계자 논의를 거쳐 「동행 비전전략체계도」를 마련함
- 동행 대출사업은 2016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매년 새로운 재원을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익활동가들에게 제공하여 2024년 10월 현재 대출집행액 45억 5천 7백만원 규모로 확대됨
- 자금의 공급·회수를 경험하는 과정에 도출된 개선과제 및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새롭게 수립된 비전·미션 체계와 정합성을 점검·강화하는 작업이 필요함

비전	공익활동가가 신뢰받는 사회				
미션	공익활동가의 지속가능한 활동과 존중받는 삶을 위한 안전망 구축				
핵심가치	공익활동가 중심		자조 · 자립		연대 · 협동
목표	핵심목표		전략목표		조직운영목표
	1. 공익활동가의 활력을 불어넣는 종합적 사회 안전망 강화	2. 공익활동가의 삶을 지탱하는 금융지원 강화	1. 공익활동가가 존중받는 사회적 인정 문화 확산	2. 지속가능한 안전망을 위한 모금 강화	자조와 연대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조직체계 구축
과제	· 종합적인 건강 의료지원강화	· 대출 지원의 확대 및 안정적인 관리	· 공익활동가가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응원 문화 조성	· 임팩트 성과 관리 및 확산	· 조합원 중심 자조 조직의 정체성 강화
	· 건강한 일상을 영위하는 자기 돌봄지원		· 공익활동가의 존재와 가치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 확산	· 체계적인 모금 수행	· 안정적·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운영 개선 및 정보 공개 강화
	· 대상별 맞춤형 안전망 지원사업				
	· 활동가 상부상을 위한 상호조사업		· 공익활동 환경 실태 연구 및 개선과제 발굴과 점검		
	· 공익활동가 전문성 강화 지원				

그림 1.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비전체계도 (2025. 2. 현재)

□ 목적

- 동행은 지난 8년간 대출기금 확보 및 대출금 집행 확대를 중요하게 추진했으며 대출사업의 관리를 병행했으나 체계적으로 진행하지는 못함
- 동행 대출사업 추진은 다수 공익활동가들의 경제적 지원 역할로써 긍정적인 결과를 낳은 반면, 상환 연체의 증가로 인해 순환대출이 어려워지고 대출기금 규모가 축소되어 지속가능한 대출사업을 어렵게 하는 부정적인 결과도 발생함. 이에 동행 대출사업 전반의 평가를 통해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자 함
- 동행 대출사업의 평가, 진단을 기반으로 동행의 특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향후 지속적인 대출사업을 가능하게 만드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동행의 대출사업 평가와 개선방안 도출 연구의 구체적 범위는 <표 1>과 같음

표 1. 연구 범위

연구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행 대출사업 성격 정리<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별 대출모델 특성· 유관 프로그램 모델 분석- 대출 프로그램 설계 개선 방향<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격· 대출용도· 신청주기· 금리· 상환기간· 성실상환 방안- 운영체계 개선 방안<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서류· 심사 (절차, 심사기준)· 약정 및 교육· 관리 (상환관리, 부실관리, 기타 금융안전망 지원)- 자원마련 및 성과관리 방안- 규정 정비, 대출업무구조 등<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정 및 업무매뉴얼 정비· 동행 직접 대출집행 및 상환을 위한 준비

2. 동행 대출사업 연구TF 추진 경과

가. TF 구성

참여자

- TF 위원
 - 장지연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상임이사, 위원장)
 - 안준상 ((사)함께만드는세상 사회연대은행 상임이사)
 - 유유미 (전국주민협동연합회 상임이사)
 - 최솔비 (전국주민협동연합회 운영팀장, 前 신나는조합 사회적금융팀장)
 - 류홍변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상임이사)
- 실무지원: 김경민 (동행 경영처장), 박소영 (동행 경영팀장)

기간: 2024. 5. ~ 2025. 02.

나. TF 회의 운영 내역

방식: 월 1회 회의를 통해 현황 분석, 사례 검토, 사안별 논의 진행

표 2. TF 회의 추진 경과

구분	일자	안건
1차 회의	2024. 05.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행 대출사업 연구계획(안) 검토 및 향후 추진방안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TF 구성 및 회의진행 방식 확정 - 연구 결과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행 대출사업 진단결과 및 개선방안 보고서 · 동행 대출사업 표준 매뉴얼 · 연구부산물 : 용어정의, 동행 직접 대출방식 검토 결과
2차 회의	2024. 05.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행 대출사업별 현황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동행 사무처 - 상환 및 연체관리 / 대출사업 추진 / 관련 기준과 규정
3차 회의	2024. 06.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행 대출사업 성격과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장지연 위원장 ○ 동행 대출사업 프로세스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최솔비 위원 ○ 공제대출 사례·시사점 (전국주민협동연합회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유유미 위원

구분	일자	안건
4차 회의	2024. 07. 10	○ 소액신용대출사업 관리 매뉴얼 검토 - 마이크로크레디트 - 발표: 안준상, 최솔비 위원 ○ 동행 대출사업 개선방안 보고서 목차 검토 - 발표: 장지연 위원장
5차 회의	2024. 08. 01	○ 동행 대출사업 개선방향 논의 - 목적별(긴급생활/고이율전환/주거비) 대출사업 분리추진 - 이자율 상향 조정 - 연체율 감소 장치 마련
6차 회의	2024. 09. 24	○ 동행 대출사업 개선방안 보고서 초안 검토 ○ 동행 대출프로그램 및 운영체계 개선방안 논의
7차 회의	2024. 11. 01	○ 동행 대출사업 개선방안 보고서 보완내용 검토 ○ 동행 대출사업 심사기준, 절차, 사후관리방안 논의
8차 회의	2024. 11. 26	○ 동행 대출사업 개선방안 보고서 보완내용 검토 ○ 대출 심사기준 및 관련서식 검토 ○ 동행 대출연구TF 자문회의 계획(안) 검토
9차 회의	2025. 02. 27	○ 동행 대출사업 개선방안 보고서 최종 검토 ○ 향후 동행 대출사업 실행방안 추가 논의

다. 자문회의 개최

- 취지
 - 동행 대출사업 개선에 대한 자문 청취, 정보교류 (신용회복, 대출상품, 상담연계, 금융교육 방안 등)를 통해 향후 동행 대출사업의 방향 정립
- 일시: 2024. 12. 09(월) 13:30 ~ 15:30
- 자문참여자
 - 이윤경 (서민금융진흥원 채권관리부장)
 - 한영섭 (사회적금융연구원 사무국장)
 - 유순덕 (롤링주빌리 상임이사)
- 주요 자문내용
 - 소액대출의 특성인 긴급성 강화 및 확대 필요
 - 대출 이자율 설정에 신중
 - 상담 및 수시 관리 강화 필요
 - 부실 관리 방안 마련
 - 대출사업 이외 금융안전망 지원방안 마련
 - 금융안전망관련 정보제공 강화
 - 타 기관 연계 방안

3. 동행 대출사업 개요

가. 대출프로그램 구성

□ 동행 대출프로그램 종합

- 동행의 대출 프로그램은 2016년 비영리 용자기금을 활용한 긴급자금대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7년 출자금 기반 소액대출, 2018년 외부 출연금을 활용한 공공상생연대 청년 공익활동가 안전망기금 대출, 2020년 중장년 공익활동가 든든기금 대출, 서울특별시 및 노사사회공헌기금의 민관협력사업 방식의 코로나19 비영리 영역 특별 용자사업 등을 추진하며 성장했음

표 3. 동행 대출프로그램 종합표

구분		시행년도	건수(건)	대출금액(원)
긴급자금대출 시범사업		2016~2019	38	250,000,000
소액대출		2017~2024	39	279,000,000
공공상생연대 청년안전망기금		2018~2024	284	2,999,360,000
중장년활동가 든든기금		2020, 2024	36	286,000,000
코로나19 비영리 특별용자	단체	2020	77	345,000,000
	개인	2020	21	531,500,000
합계			495	4,690,860,000

* 각 프로그램별 세부현황은 제3장 프로그램 개선방안 참조

나. 대출사업 운영 구조와 절차

□ 재원 구조

- 동행의 대출프로그램은 총 5개로 각각 대출기금의 재원은 아래 표와 같음

표 4. 동행 대출사업 재원구조

구분	형태	출처	금액(원)
긴급자금대출 시범사업	차입금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200,000,000
		한국사회혁신금융	50,000,000
	소계		250,000,000
소액대출	출자금	동행 조합가입출자금	269,000,000
공공상생연대 청년안전망기금	출연금	공공상생연대기금	1,500,000,000
중장년활동가 든든기금	차입금	신나는조합	100,000,000
	지원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98,000,000
	출자금	동행 목적출자금	13,000,000
	소계		1,980,000,000
코로나19 비영리 특별용자	차입금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860,000,000
		사무금융 우분투자재단	105,000,000
		공공상생연대기금	200,000,000
	출연금	금융산업공익재단	200,000,000
	소계		1,365,000,000
합계			3,595,000,000

□ 의사결정 구조

- 동행은 각 대출프로그램 별 계획에 따라 매해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하여 3월경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계획안 승인 후 추진
- 대출프로그램 추진사항에 대해 이사회에서 보고 및 의결
 - 대출 계획변경, 신규대출 개발, 대출규모 변경 등은 이사회 의결로 정함

□ 심사 구조

- 동행 대출심사위원회는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대출심사위원장의 주재로 연 2회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심사위원회 회의를 진행
- 대출신청서류의 신청적격 여부는 사무처에서 검토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
- 대출신청 적격 여부를 포함한 신청서류에 대해 각 심사위원들이 검토, 만장일치 합의로 각 신청자들에 대해 대출승인 여부 및 승인금액 결정

□ 업무 구조

- 동행 대출 프로그램은 경영처 담당으로, 전담자 또는 전담부서는 없으며 경영처 팀장이 주 업무 담당임. 동행 사무처의 전체 업무 구조는 아래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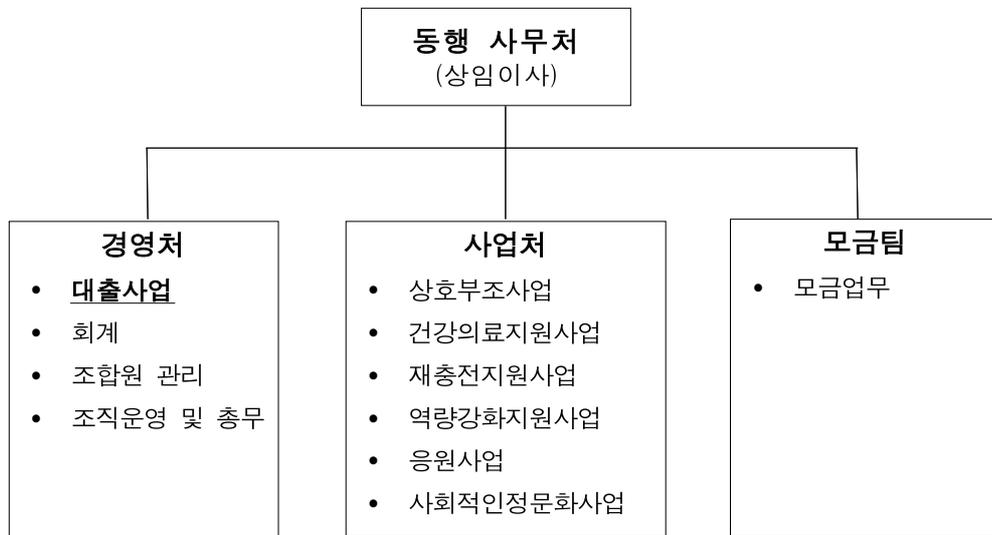


그림 2. 동행 사무처 업무 구조

□ 동행 대출 프로그램 진행 절차

- 동행 대출 프로그램은 공고 및 신청, 2단계 심사, 선정자 교육 및 약정, 상환관리 및 사후관리의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그림 3. 동행 대출 진행 절차

4. 고려 사항

<p>정 체 성</p>	<p>동행 대출사업의 혼합적 성격을 이해하고 함께 지향하는 방향으로 결과 도출</p> <p>조합원들이 만드는 자조 금융 + 공익활동가 금융안전망 지원</p>		
<p>목 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활동가들의 특성에 부합하는 대출사업으로 정비 ▪ 관리 효율화 및 부실 감소 등을 통한 대출사업 지속가능성 확보 		
<p>주 안 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행 내·외부의 서민금융 및 자조금융 전문가들의 자료분석, 실무경험 등에서 도출된 의견을 수렴하여 결과 정리 ✓ 지난 동행 대출사업을 통해 확인된 각종 데이터 및 참여자들의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결과 정리 		
<p>세 부 과 제</p>	<p>프로그램 설계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격 및 조건 - 대출 용도 - 금리 - 상환기간 등 	<p>운영체계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서식 - 심사 절차 - 약정 및 교육 - 상환관리 등 사후관리 - 대손관리 	<p>재원마련·성과관리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재원 마련 및 관리 - 성과평가 및 관리 방안

그림 4. 대출사업 개선TF 활동 고려사항

제2장. 사업 방향 검토

1. 재원별 운영 제약

가. 재원별 특징

- 동행에서 대출 프로그램을 위해 활용한 자원은 ▶ 출자금, ▶ 출연금, ▶ 차입금, ▶ 지원금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

표 5. 대출 재원의 유형

구분	내용	활용 프로그램
출 자 금	조합원 출자금 (동행 조합원)	소액대출(2017)
출 연 금	외부 출연금 (공익재단)	공공상생연대 청년안전망기금(2018)
지 원 금	공익목적활동 지원사업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장년활동가 든든기금(2020)
차 입 금	비영리 용자재원 차입/재용자 (지자체, 중개기관, 공익재단 등)	긴급자금대출 시범사업(2016~2019) 코로나19 대출(2020)

- (출자금) 동행 조합원 출자금으로, 법적 기준과 출자금에 대한 조합원 인식 고려
 - 납입 출자금 총액의 2/3 한도에서 소액대출 시행 가능, 이자율은 정관에 규정
 - 조합 탈퇴 시 조합원 청구에 의한 반환 의무가 발생하나, 손실/채무 반영 가능
 - 「협동조합기본법」 제94조(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제26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 (출연금) 자금 제공자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제공하는 자금으로 기부금에 해당
 - 출연금은 용도가 정해진 지원금과 달리 통상 포괄적으로 지원하며, 일반적으로 사후 정산을 하지 않음¹⁾
 - 대출 재원의 경우 사용 목적을 정하고 출연하는 목적성 출연 형태를 띄게 됨²⁾

1) 법제처 「2023 법령안심사기준」 266~269면

<https://www.lawmaking.go.kr/lmKnlg/jdgStd/info?astSeq=2236&astClsCd=CF0101> (2024. 10. 6. 접속)

2) 국가 재정에서 출연금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출연금의 유형을 구분하고 성격에 따른 관리체계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출연 이후 통제가 불가능한 본원적 성질에 기인한 것으로 실제 통제는 사전단계에 집중됨 (국회예산정책처, 「출연금 현황과 개선과제」, 2022. 5.)

- (지원금) 자금 제공자의 공익목적 프로그램 안에서 제공되는 자금으로,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제공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상 제약 존재
 - 공익목적 사업수행 비용으로 제공되어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하며,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은 반환하는 것이 원칙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타 공익법인의 공익목적 프로그램 일환으로 제공
- (차입금) 비영리 대출 프로그램 지원 목적의 용자기금 차입
 - 무이자 차입 후 채용자 방식을 사용하고, 상환받은 재원을 재상환하는 방식
 - 제공되는 자금 규모와 무관하게 비영리 성격을 강조하기 위한 저리 이자(2~3%) 정책을 고수하기 때문에, 손실 충당을 위한 매칭 자부담금 필요함

나. 검토 틀

- 동행의 대출 재원과 프로그램은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사회적 금융 스펙트럼 상의 위치에 따라 성격을 구분할 수 있음
 - 사회적 금융의 주요 주체인 투자자, 중개 기관, 수요자는 재무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어느 정도 고려하는지에 따라 스펙트럼 상의 고유한 활동 범위를 갖게 됨
 - 조합원을 위해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행은 중개 기관의 역할 수행
 -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은 스펙트럼 상의 각기 다른 위치에 있는 자원과 수요를 매칭하고 연결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사회적 가치 실현전략을 충족시키는 역할 수행
 - 자원의 혼합 사용으로 사용 자원 규모화 추구

사회가치만 추구	사회가치 우선	동시 추구	재무가치 우선	재무가치만 추구
사회적 가치만 추구, 재무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음	사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 재무적 가치 고려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가치 동시에 추구	재무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 사회적 가치를 고려	재무적 가치만 추구,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음
자금은 상환되지 않음	원금 손실 감수	시장 이하 수익률 기대	시장 수익률 추구	시장 수익률 추구
◀ 사회적 가치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음 한시적 지원(1~3년) 자원 혼합 어려움 집행 과정 중심 통제	중개기관의 역할 각기 다른 스펙트럼에 위치한 자원과 수요를 연결하는 역할; 자원의 혼합 사용으로 가용 자원 규모화, 다양한 성장 모델과 사회적 가치 실현 전략 뒷받침		▶ 재무적 가치 규모 있는 자금 동원 가능 자원 혼합 상대적으로 용이 재무적 성과 중심 통제 스케일업을 위해 필요	

그림 5. 사회적 금융 스펙트럼

□ 재원에 따라 ▶ 손실 허용 정도, ▶ 이자율 한도, ▶ 내용구성 재량에서 차이가 존재하여, 재원의 성격은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침

○ 주요 검토 항목

- (손실 허용 가능성) 위험감수 범위, 대상 포용 범위에 영향
- (이자율 제한) 이자를 통해 대응 가능한 위험 감수 범위, 대출에 수반하는 비금융 지원 등 프로그램 구성에 영향
- (내용구성 재량) 대상 및 용도 관련 수요 변화 대응, 운영상 시행착오 결과를 반영한 대출 프로그램 구성에 영향

□ 대출 재원의 사회적 금융 스펙트럼 상 위치는 제각기 다르고, 그에 따라 대출 프로그램의 성격도 제약을 받게 됨

- 출자금: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가치를 동시 추구하지만, 출자금 반환을 고려해 손실 회피 경향이 높음
- 출연금: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형성·운영되는 자금이므로 사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되,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운영
- 지원금: 사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점에서 출연금과 같고, 소멸성 자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속가능성 측면의 재무적 가치가 가장 적게 고려되는 자금
- 차입금: 원금 상환 의무가 있으면서 공익 목적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자금으로 스펙트럼 상 위치가 가장 협소한 자금. 프로그램 규모화 차원에서 활용 가능

구분	사회적 가치만 추구	사회적 가치 우선 추구	사회/재무가치 함께 추구	재무적 가치 우선 추구	재무적 가치만 추구
	상환되지 않는 자금	원금 손실 감수	원금 보전	시장 이하 수익률 추구	시장 수익률 추구
출자금		③	①	②	
출연금	③	①	②	④	
지원금	②	①	③		
차입금 (비영리 응자기금)			①		

그림 6. 대출 재원별 사회적 금융 스펙트럼 상 위치

다. 재원별 용자 모델 검토

1) 출자금

- 조합원에게 반환해야 하는 자금으로 상황에 따라 손실 감수도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원금 보존을 목적으로 운용해야 함
- (손실) 손실 발생 시 목적 부합성을 설명하고 손실 처리 가능하지만, 처음부터 손실을 염두에 두고 운영할 수는 없는 자금으로, 원금 보존을 목적으로 해야 함
- (이자) 「협동조합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소액대출 이자율의 최고 한도는 은행 이자율을 고려해 정하고, 이를 정관에 기재하게 되어있어 이자율에 제약 존재
- (용도) 조합원으로 대상 범위 제한, 대출의 내용은 별다른 제약 없이 구성 가능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22조(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①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소액대출(이하 이 조에서 “소액대출”이라 한다)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1. 조합원의 수
2. 출자금 규모
3. 소액대출의 종류

② 소액대출 이자율은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소액대출 이자율의 최고 한도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를 고려하여 정한다.³⁾

③ 소액대출의 연체이자율은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율의 최고한도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을 넘을 수 없다.

④ 소액대출 사업은 법 제93조의 주 사업 및 그 밖의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 (용자 모델) 이자 수입 범위 안에서 손실 관리, 연체는 기간을 연장해서 관리하되 연체이자는 은행이자 수준으로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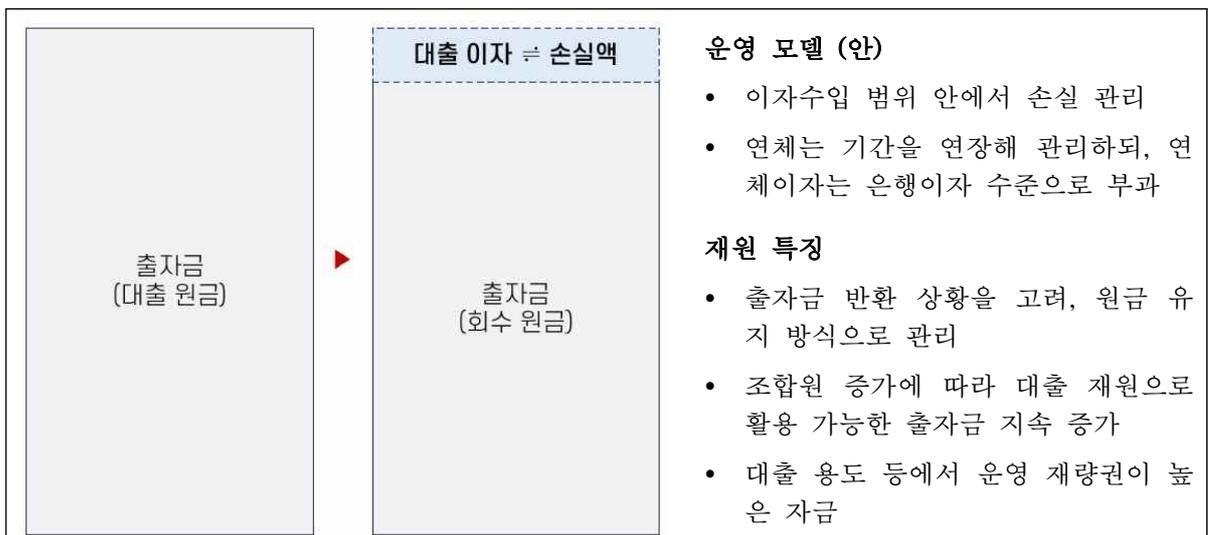


그림 7. 재원에 따른 운영 모델 - 조합원 출자금

3) 2024년 8월 예금은행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는 4.08% (지난 5년간 2.7 ~ 5.7% 사이에서 움직임)

2) 출연금 (기부금)

- 공익활동가 금융지원 목적으로 출연된 자금으로, 사업의 고유한 목적 실현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운용 가능
- (손실) 손실 감수 가능, 환경 변화에 따라 위험 감수 수준 유연하게 조절
- (이자) 사업의 목적과 위험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자율 설정 가능
- (용도) 지원 대상과 용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재량권을 가질 수 있음
 - 출연자와 상환액 활용 방안 사전 합의 (기금화를 통한 재투자 계획 합의)
- (유자 모델) 목표 손실율을 가지고 기금 운용, 손실충당금 지속 확보, 손실 발생 시 상환면제 처리 기준을 마련해 두고 심의위원회 통해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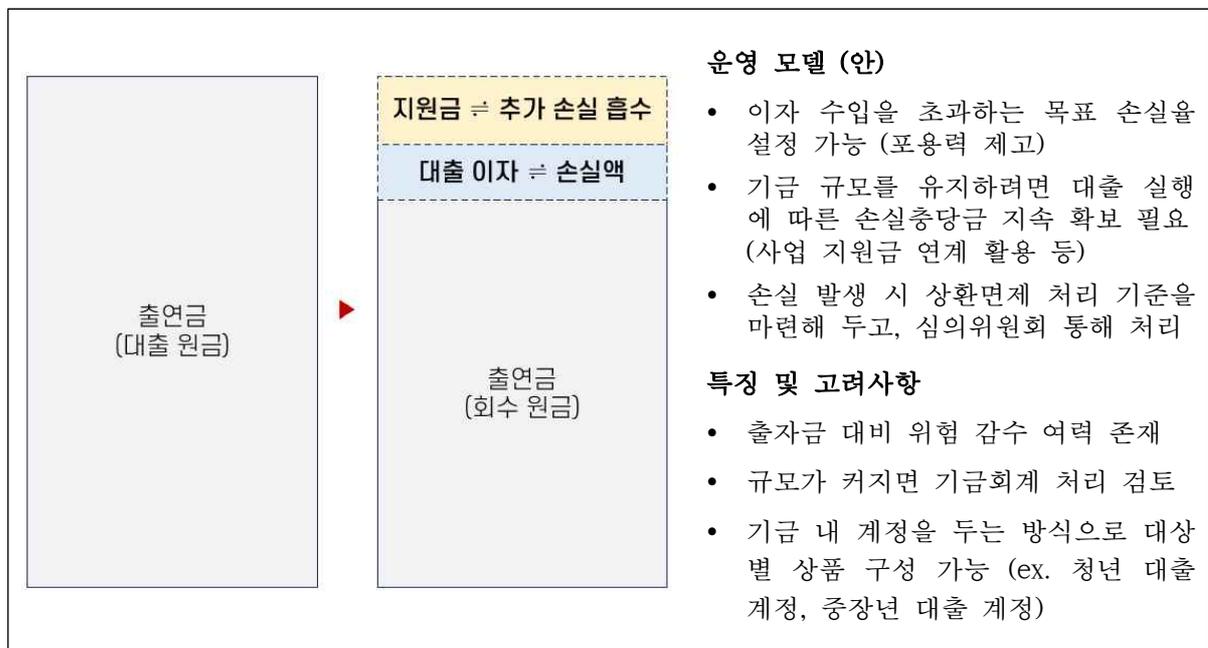


그림 8. 재원에 따른 운영 모델 - 출연금

3) 지원금 (지원사업비)

- 특정한 공익목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사업비로 대개 소멸성 자금이기 때문에 상환 자원 활용 방안을 합의하는 과정이 중요함
- (손실) 기본적으로 소멸성 자금이기 때문에, 손실 감수 가능성이 높음
- (이자) 공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이자율 제한 기준이 존재하거나, 기준이 없더라도 낮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
- (재량) 대상을 소득 수준에 따라 제한하는 등 제약을 받을 수 있음
- (융자 모델) 상대적으로 높은 손실 부담 가능, 상환 자금을 활용해 기본적인 대출 프로그램의 유용성을 높이는 용도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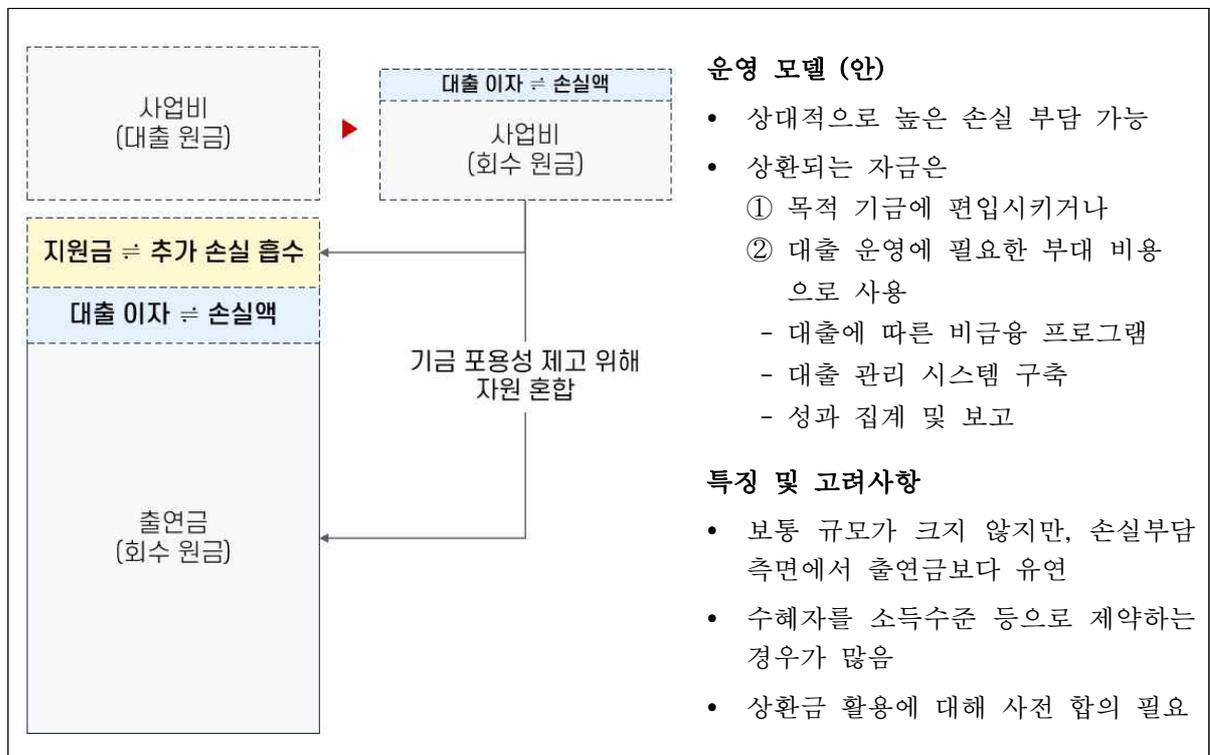


그림 9. 재원에 따른 운영 모델 - 지원금

4) 차입금 (비영리 융자기금)

- 자금 제공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자금으로 원금 보존을 목적으로 운용
- (손실) 손실이 허용되지 않으며,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자부담 매칭액에서 손실을 충당해 상환할 것으로 기대
 - 손실 흡수 및 사업 규모 확대를 위해 통상 자부담액 매칭이 요구되며, 자금 조달 시 대표자 보증 등 성실 상환을 강제할 조건을 가지고 계약 체결
- (이자) 지자체 등으로부터 무이자 또는 초저금리로 조달하는 자금으로, 마이크로크레디트(소액신용대출) 사업 틀 안에서 운영되고 낮은 이자율을 요구 받음
 - 일반적으로 대출 프로그램의 비영리성 강조, 2~3%로 이자율 한도 제한
- (용도) 통상 비영리 융자기금이 설정한 고유한 프로그램에 의해 제약 받음
 - ex. 코로나19 긴급자금 융자 등
- (융자 모델)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 손실 관리, 자원 공급자와 손실 분담 또는 이자율 조건 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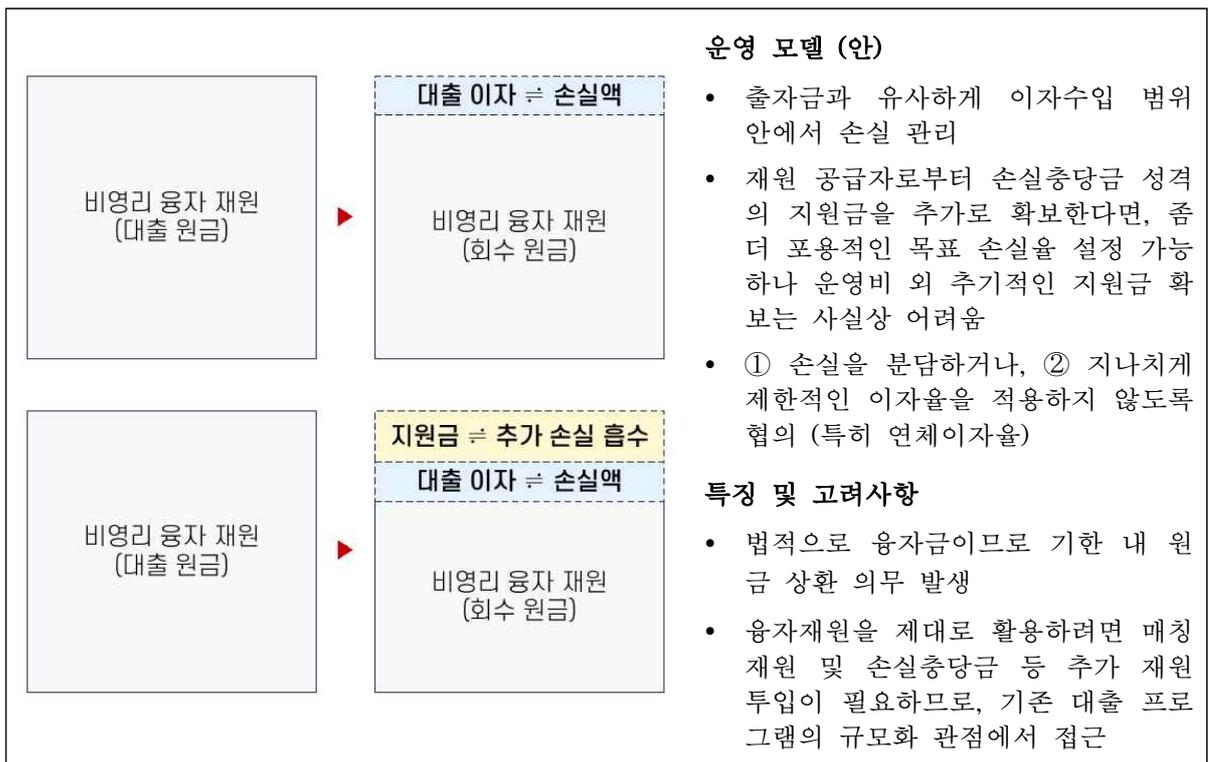


그림 10. 재원에 따른 운영 모델 - 차입금

5) 회고 및 시사점

- 외부 조달 재원일수록
 - ① 낮은 이자율(비영리성 강조)
 - ② 전문기관을 통한 위탁/협력 방식 운영(체계적 운영 보장)
 - ③ 테마 부여(시의성 부각)의 특징을 보임

표 6. 대출 재원 중심 프로그램 검토

(단위: 백만원)

재원	프로그램	상품 구성					운영 방식	상태
		대상1	대상2	금액	기간	이율		
차입금	긴급자금대출 시범사업(16-19)	조합원	일반	10	3년	3%	위탁/협력	종료/상환관리
출자금	소액대출(17-)	조합원	일반	10	3년	3%	자체운영	지속
출연금	공공상생연대 청년안전망기금(18-)	조합원	청년	10	5년	1%	위탁/협력	지속
지원금	중장년활동가 든든기금(20-)	조합원	중장년	20	3년	1%	위탁/협력	지속
차입금	비영리대출-단체(20-)	+비조합원	단체	20	3년	1%	위탁/협력	종료/상환관리
	비영리대출-개인(20-)	+비조합원	일반	10	3년	1%	위탁/협력	종료/상환관리

라. 재원 및 프로그램 관리 체계

1) 재원 관리 방안

-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운영·관리 상의 재량을 고려하면 출자금과 출연금을 대출의 ‘기본 재원’으로, 지원금과 차입금을 ‘추가 재원’으로 간주
- 기본 재원: 출자금(조합원출자금), 출연금(기부금)
- 추가 재원: 지원금(지원사업비), 차입금(비영리 용자기금, 정책자금 차입)

표 7. 대출 재원 구분

구분	해당 재원	비고
기본 재원	출자금(조합원 출자금), 출연금(기부금)	
추가 재원	지원금(지원사업비), 차입금(무이자 용자)	

2) 프로그램 관리 방안

- 대출 프로그램을 기본 프로그램과 특별 프로그램으로 구분하고, 장기적으로 기본 프로그램과 기본 재원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관리
- 기본 프로그램은 출자금, 출연금 등 기본 재원으로 구성
- 특별 프로그램은 추가 재원 조성 과정에서 설치/운영
 - 추가 재원이 대출-상환 과정을 거쳐 기본 재원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 (1) 특별 프로그램을 기본 프로그램으로 편입시키거나,
 - (2) 추가 재원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기본 프로그램을 보장하는 용도로 활용

표 8. 대출 프로그램 구분

구분	내용	비고
기본 프로그램	기본재원을 활용한 조합원 소액대출, 기금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 소액대출 · 청년안전망기금 대출
특별 프로그램	기본프로그램 외 추가 재원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대출 · 중장년활동가 든든기금

3) 대출 프로그램 운영 방식

- 기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자체 운영체계 구축
 - 자체적으로 운영 가능한 범위 안에서 기본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 파트너십을 통해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 개발

표 9. 대출 자원 및 프로그램 관리 체계(안)

구분	해당 자원	대출 프로그램	운영 방식
기본 자원	출자금(조합원 출자금) 출연금(기부금)	기본 프로그램 구성	자체 운영 (핵심 구성 중심)
추가 자원	지원금(지원사업비) 차입금(무이자 융자)	특별 프로그램 구성 + 기본 상품 보완	파트너십으로 운영 (프로그램 다양성 확보)

4) 기본 프로그램 운영 방향

- 기본 프로그램 재원이 사업 운영 과정에서 고갈되지 않고 지속가능성을 갖출 수 있도록 균형 상태로 이동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규모의 수입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손실충당액을 상쇄하는 수준의 이자수입 확보가 필수적임
 - (비용) 손실충당액, 운영비; (수입) 이자수입, 기타 수수료
 - ☞ **기 발생한 손실 규모와 추이를 반영해 이자율 상향 조치 필요**
- 동행 대출사업의 효과성 증대를 위해서는 기본 프로그램에 대한 조합원 관여도를 높이고 조합원 중심성을 강화해 출자금 규모를 확대해 가는 접근이 필요함
 - 현재 대출 기간이 3~5년으로 지원사업 대비 장기적이고, 그 기간만큼 상환관리 등 사후관리가 수반되는 사업임을 고려하여, 조합활동 경험이 축적된 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대출을 명확히 목적으로 하는 회원가입은 바람직하지 않음
 - ☞ **기본 프로그램의 대출사업 신청자격 강화 필요 (조합 활동기간 중심)**

2. 대출 프로그램 성과 모델

가. 유관 프로그램

1) 마이크로크레딧

□ 개념과 발전 (박창균, 2009)⁴⁾

- 저소득층에 대한 소규모 무담보 대출 서비스
 - 차주가 직접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소규모 자영업이나 영세기업에 대한 창업 및 운영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이들의 소득창출 기반을 강화
 - 자산 부족으로 담보 능력이 극히 취약하거나 전무한 계층을 상대로 무담보 대출
 - 지역사회 또는 대면 관계인과의 공동 연대 보증, 강제 저축 등의 보완책을 강구함으로써 연체로 인한 손실 발생에 대응
 - 대부분 저소득층의 소득 향상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하는 비영리 NGO가 공급
 - 처음 시작된 남미나 남아시아 각국에서 규모가 커지고 제도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1970년대 후반부터 마이크로크레딧으로 불리기 시작
- 1990년대 들어 개념적 외연이 확대되면서 저소득층 소득창출 기반강화 지원을 위한 종합 금융서비스 제공을 지칭하는 마이크로파이낸스로 불리우는 경향
 - 적절한 저축계좌, 자금이체, 보험 등 보다 넓은 범위의 금융서비스 포괄
 - 마이크로파이낸스 개념 확립과 함께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 주체 등장
 - 저소득층의 신용위험에 대한 정보 축적 및 평가 기법 개발, 사업 경험 축적, 높은 상환 실적 등 사업성과 누적
 - 사업 규모가 확대되면서 종래의 비영리 단체가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 모델로 전환하거나 원래부터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
- 2000년대 들어 포용적 금융 시스템으로 재정의되어 가는 경향
 - 저소득층 빈곤 탈출의 근본적인 해법은 소득 창출 능력의 증대이며, 이는 개별적인 금융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해결하기 힘든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
 - 저소득층을 둘러싼 금융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들이 처한 금융 환경의

4) 박창균, 「마이크로 크레딧의 현황 및 정책 과제」 ((주)한국채권연구원, 2009. 12, 금융위원회 연구용역)

개선을 위한 활동 병행, 민간 차원에서 시작된 개별 사업 모형의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보다 대규모 차원에서 적용하려는 노력 전개

- 마이크로크레디트는 1970년대 이후 30여 년의 경험을 통해 극심한 금융 결핍 사회에 최소한의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가시적인 빈곤퇴치 성과를 이룩할 수 있음을 증명
- 마이크로크레디트는 선진국에도 수용되어 점차 심화되는 소득 분배 불평등 문제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하나로 활용되기도 함
 -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서비스 제공으로 생존가능성과 소득창출 능력 제고 추구
 - 유럽연합의 경우 마이크로파이낸스를 중소기업 정책의 일부분으로 편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혁신 촉진, 고용증진, 사회적 유대 강화 등을 목표함

□ 특징

- (목적) 저소득층 소득창출기반 강화 지원, 빈곤퇴치, 경제발전, 소득분배개선 추구
- (대상) 저소득 영세 자영업자, 창업과 소규모기업 운영 지원
- (서비스) 신용 공급과 함께 경영 관련 기술을 제공, 비금융 지원 병행

□ 국내 현황

-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반 실업 극복 및 저소득층의 자활 지원을 목적으로 비영리 기관 주도로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 시작
 - 신나는조합(2000년), 사회연대은행(2002년) 출범, 아름다운재단 희망가게(2003년) 사업 개시
- 2005년 마이크로크레디트의 자립지원 성과의 영향으로 정부의 기존 시혜 중심의 자활지원 제도가 일자리 및 소득 창출 중심의 생산적 복지로 전환되어 정부 부처의 마이크로크레디트형 위탁 사업 확대
 - 보건복지부 자활공동체 및 여성가족부 성매매피해여성 창업지원사업
- 2008년 지자체 중심의 마이크로크레디트 형태의 창업지원기금 조성이 시작되면서 여러 지자체에서 예산 등으로 조성된 기금이 민간 마이크로크레디트 기관으로 위탁하는 형태로 지원 확대
 - 강남구 희망실현창구(2008년), 서울시 희망드림뱅크(2009년), 과천시 희망금융(2010년) 등

- 2007년 8월, 휴면예금의 마이크로크레디트 공공재원 활용을 목적으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특별법이 마련되고, 이를 통해 미소금융중앙재단(구 휴면예금관리재단, 소액서민금융재단)이 설립되어 정부 주도형 마이크로크레디트로 전환 및 민간의 자생적 마이크로크레디트 기관의 활동 위축
 - 사회연대은행, 함께일하는재단, 신나는조합 등 민간 최초 복지사업자 선정(2008년)
- 2013년 지자체의 보증재단 및 금고 연계형 마이크로크레디트 시행
 -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디트(2013년, 사회연대은행, 신나는조합, 열매나눔재단 등), 경기도 마이크로크레디트 굿모닝론(2015년, 경기광역자활센터)
- 2016년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으로 정부 주도형 마이크로크레디트로 변화
 - 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특별법(2016.3)에 따라 구 미소금융중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 및 국민행복기금이 통합하여 공공기관화 되고, 마이크로크레디트 금융지원형태가 서민금융지원 형태로 전환
-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경기도 소재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의 긴급생계자금지원을 위한 경기극저신용대출사업(경기복지재단 업무위탁 방식) 3년간 진행
 - 사회연대은행, 롤링주빌리,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2024년 10월 현재, 정부 및 지자체 중심의 마이크로크레디트형 지원사업 대부분 종료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대출지원형 배분사업의 축소로 민간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 위축

2) 서민금융 (소액신용대출)

□ 개념 및 발전 (석희정 외, 2010)

- 서민금융 개념은 2010년 이후 국내에서 등장한 용어로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정의되어 지고 있음
 - 첫 번째는 금융시장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신용도가 낮아 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 수요자를 주 고객으로 하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서 취급하는 제도로 정의
 - 두 번째는 정책적 관점에서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상적 대출을 받지 못하는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제도로 정의(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 세 번째는 마이크로크레디트 관점에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에게 소액 신용대출 공급을 통해 소득창출 기반을 제공하고 자력으로 탈빈곤할 수 있는 지원제도로 정의 (방글라데시 그라민은행 등)
 -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중류 이하’와 ‘넉넉하지 못한 생활’로 정의되는 서민의 범주가 확대됨에 따라 소득과 신용도 등 절대적인 기준과 함께 영세 자영업자, 불규칙 노동자 등 소득과 금융환경에 따라서 개념적 정의가 폭넓게 사용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서민금융’의 경우 소득과 신용도가 낮아 제1금융권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을 대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서비스를 통칭
 - 신용등급 기준 5등급 이하 중신용자까지를 서민금융 대상자로 분류하며 신용평점, 연소득, 중위소득 등을 서민금융 대상자 기준으로 사용 중
 - 또한 개별법에 상황에 따라 서민금융 대상자를 별도 언급하기도 함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 *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취약계층 중 저소득층)

□ 특징

- (목적) 1금융권에서 신용대출 등 자금 조달이 어려운 서민을 대상으로 생계비, 창업, 자영업 운영, 대환자금 등의 목적에 필요한 금융 공급
- (대상) 특정 수준 이하의 연소득, 개인신용평점 혹은 중위소득을 가지고 있는 서민 중 금융공급이 필요한 자
- (서비스) 정책금융 성격의 금융 공급, 금융복지 상담 등

□ 국내 현황



그림 11. 국내 서민금융 현황

- 국내 일반 서민금융 체계 내에서는 상호금융사나 저축은행 등을 통해서 법정 금리 한도 내에서 신용대출 등의 방식으로 금융공급
 - 24년 10월말 기준 저축은행 신용대출 최대 1억 원, 연금리 7.90~19.9% 수준
 - ☞ 서민우대 정책금융의 경우 2금융권을 통해서 신용보증방식으로 금융을 공급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금융지원 형태로 공급하는 형태가 일반적임
 - 24년 10월말 기준 햇살론15의 경우 최대 2,000만원, 연금리 15.9% 수준
 - 서민금융진흥원 민간사업수행기관 창업 및 운영자금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의 재원을 0%로 차입하여 사회적 금융 방식으로 민간 비영리법인의 재량에 따라 운영 중(24년 10월말 기준 사업수행기관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나눔과기쁨, 더불어사는사람들)
 -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 해당자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
 - * 대출한도 창업자금(최대 7천만원, 5년 이내, 최대 연 6%)
- 2007년 4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의 관한 법률’ 이 만들어지고 이후 2008년 3월 휴면예금관리재단(이후 소액서민금융재단) 출범, 2009년 9월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확대 개편하여 휴면예금 등을 재원으로 기존 마이크로크레디트 운영법인을 복지사업자로 활용한 서민금융 공급 체계가 최초로 만들어짐

- 2016년 9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기존 미소금융중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이 통합하여 서민의 금융생활을 지원하고 이를 통한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출범. 이후 2018년 1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거 ‘기타 공공기관’ 으로 지정
- 미소금융중앙재단 설립 및 서민금융진흥원 출범 이후 서민금융 지원체계는 기존 금융회사의 기부금 및 휴면예금,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공공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 중심의 정책금융 위주로 진행되어 옴
- 서민금융진흥원의 심사를 통한 보증서 발부 및 보증서 담보부 협약 금융기관에서 소액신용대출이 진행되는 형태가 대부분이며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 및 민간사업수행기관을 통한 창업 및 운영자금 형태 일부 운영 중

표 10. 서민금융진흥원 대표 정책금융 상품

생활 안정자금			
햇살론 유스	대학생 및 청년의 금융애로 해소 목적 (복권기금)	만 19세~34세,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자	동일인 1인 최대 12백만원 (최대 연4.5%)
햇살론뱅크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제도권 금융권 안착 지원 (은행권 출연금)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로 부채 또는 신용도 개선자	최대 25백만원 (취급점별 상이)
근로자 햇살론	저소득 저신용 근로자의 금융 접근성 제고(복권기금 및 금융회사 출연금)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최대 20백만원 (연11.5% 이하)
고금리 대안자금			
햇살론 15	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밖에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 금융 공급(서민금융진흥원 보증)	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연소득 35백만원 이하는 제한 없음)	최대 20백만원 (최대 연15.9%)
특례보증	햇살론15 이용이 어려운 최저 신용자 금융 공급(서민금융진흥원 보증)	햇살론15 보증 거절자로 개인신용 평점 하위 10% 이하자	동일인 1인 최대 10백만원 (최대 연15.9%)
소액생계비	저소득 저신용자 긴급생계비 형태 금융 공급(서민금융진흥원 대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자	최대 1백만원 (최대 연 15.9%)

3) 공제 대출 (적립형 공제)

□ 공제 대출 개념 및 발전

- 공제의 역사는 매우 오래된 전통을 지닌 사회적 상호부조 및 경제적 협력의 형태로,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 간의 협력과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발전. 이 개념은 기본적으로 상호부조(相互扶助)와 협력의 원칙에 근거한 것으로,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여 위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분담하고 해결하려는 목적을 가짐
 - 한국에서 최초로 공제회의 형태를 표방한 조직은 1920년 4월 창립된 조선노동공제회로 당시 일제강점기에 한국의 노동자들은 일제의 억압 속에서 상호 부조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자발적으로 공제회를 결성
 - 한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산업보증제도와 노동계층의 변화에 따라 공제회가 급증했는데 2014년까지 한국에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이 92개에 달할 정도로, 공제회는 노동자 계층의 상호부조와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 옴

표 11. 연대별·공제유형별 공제사업 신설 추이

구분	~1950년	~1960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일반공제	1(1)	1(2)	- (2)	1(3)	1(4)	- (4)	-1(3)
조합공제	1(1)	4(5)	2(7)	11(18)	13(31)	28(59)	12(71)
정책성 공제	-	-	-	-	1(1)	3(4)	2(6)
상호부조형 공제	1(1)	1(2)	2(4)	4(8)	- (8)	2(10)	2(12)

- 현대 공제회는 상호주의와 자율성을 기반으로, 공동체 문화와 노동 개선을 위한 확산 활동을 벌이며, 취약계층의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음
 - 역사적으로, 공제는 노동자들의 자치적이고 자발적인 협력의 결과로 등장, 오늘날에도 공제는 여전히 중요한 경제적, 사회적 기능을 하며, 상호부조와 공동체 정신을 통해 위험 관리와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음
 - 단순한 위험 분담의 차원을 넘어,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통해 공동체 결속을 다지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 예를 들어, 주택금융공제조합과 같은 주택 관련 공제회, 그리고 야학 운영 및 소비조합 활동을 펼치는 공제회들이 존재하며, 이는 경제 위기에 직면한 이들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기능함
 - 코로나19 같은 사회 변화로 인해, 노동 취약계층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자조적인 조직화와 공제 활동을 통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려는 시도를 확대하고 있음

□ 특징

- (목적) 공동체 구성원들이 일정한 금액을 각출하여 서로 협력하여 위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분담하고 해결
- (대상) 회원 조합 및 조합원
- (서비스) 상호부조, 적립형 공제를 통한 목돈마련 지원, 생활자금 대출 등

□ 국내 현황

- 국내에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공제회는 100여 개로 추정됨. 한국의 공제는 특별법에 설립근거가 있는 공제와 민법(제32조) 근거한 공제로 구분하는데, 대부분 주무부서의 행정지도와 지휘·감독을 받아 그 현황 파악이 어려움
- 생협의 경우 2010년 생협법 개정을 통해 전국연합회와 연합회의 공제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으나 공제 규정에 담겨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지 않아 본격적인 수행이 지연되고 있음
- 상호부조에 기반한 자조적인 안전망의 대표적인 사례로 안산·시흥지역 노동자 생활공제회 ‘좋은이웃’, 전국화학식품섬유노조 ‘봉제인공제회’, 지역별 자활공동체 기반 ‘전국주민협동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우리함께’, 공익활동가 안전망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노동공제연합 ‘풀빵’ 이 있음

표 12. 공제상품 예시 - 전국주민협동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우리함께

상호부조 ‘천원의 행복’		생활자금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1,000원 적립, • 의료비 최대 30만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립형 공제부금을 기초 재원으로 회원 조합 내에서 생활자금 대출 제공 • 주거대출 등 안전망이 필요한 대출은 연합회에서 지원 			
적립형 공제 ‘모으면 돼지’					
월 본인 적립액	3년 만기시				비고
	총 적립금	3% 응원금	만기축하금	모으면 돼지	
5만원	180만원	83,250원	지역상품권 3만원	1,913,250원	매월 적립 총 36회 납입
10만원	360만원	166,500원	지역상품권 3만원	3,796,500원	
15만원	540만원	249,750원	지역상품권 3만원	5,679,750원	
300만원	300만원	270,000원	지역상품권 3만원	3,300,000원	일시납, 3년 유지

표 13. 공제상품 예시 - 노동공제연합 사단법인 풀빵

풀빵 적립형 공제					
월 본인적립액	36회		60회		비고
	총 적립금	응원금	총 적립금	응원금	
5만원	180만원	5만원	300만원	15만원	매월 적립 총 회차 납입
10만원	360만원	10만원	600만원	30만원	
15만원	540만원	15만원	900만원	45만원	
20만원	720만원	20만원	1,200만원	60만원	

4) 노동 복지 (근로복지기금)

□ 노동복지 개념 및 발전

- 노동복지는 노동과 연계하여 제공되는 시장외적인 급여와 서비스 (이병훈 외, 2002)⁵⁾
 - 복지서비스 공급주체를 기준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국가복지, 기업에 의해 제공되는 기업복지, 노조 중 심의 자주적 복지로 구분할 수 있음
 - 북유럽 국가는 공공복지(국가복지), 미국과 일본은 기업복지 중심으로 발달
 - 복지급여의 재원출처를 기준으로 국가복지, 민간 기업복지, 준공공복지로 구분

표 14. 재원출처를 기준으로 구분한 복지 유형

국가 복지	준공공복지	민간 기업복지
정부가 일반 및 특별재정 예산을 복지재원으로 조성해 직접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제공하는 노동복지서비스	사업주에 의해 재원이 마련되지만 공공기관이 관리/운영하거나(법정 기업복지), 사업주와 정부가 공동 지원한 재원으로 외부 공공복지기관이 소속 노동자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민관출연 복지)하는 중간적 형태	사용자가 자체 재원을 투입해 독자적으로 종사자들에게 부가급여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법정 외 복지프로그램

- 국내에서는 2002년에 제정된 「근로복지기본법」이 노동복지와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 노동조합의 책무를 규정하고, 활용 가능한 제도를 규율
 - (공공근로복지) 주거안정,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신용보증, 근로복지 시설 지원
 - (기업근로복지) 우리사주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선택적 복지제도 및 근로자지원프로그램

5) 이병훈, 류만희. 2002. 「노동복지의 국가별 접근유형에 관한 비교연구: 북유럽·미국·일본을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8(2), 171-197.

- (근로복지진흥기금) 주택구입자금 용자, 생활안정자금 용자, 자녀 학자금 용자 및 각종 근로복지제도 지원에 사용됨 (근로복지공단이 운영)

□ 근로복지기금 제도 및 지원사업

-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기금을 설치해 노동복지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 (1983년부터 시행, 1991년 관련 법령으로 제도화)
 - (설치) 고용노동부 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법인으로 설립. 정관, 복지기금협의회 (노사 동수)를 중심으로 운영. 이사/감사(무보수, 비상근) 선임.
 - (재원)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출연 (손금 산입)
 - (사업) 기금의 수익금으로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 생활원조, 일가정 양립 비용지원 및 근로복지시설 구입·설치 및 운영
 - (기본재산 사용) 기금의 수익금 외에도 기본재산의 50~90% 한도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고(사업마다 한도 다름), 주거구입/임대, 우리사주 구입, 생활 안정을 위한 용자에도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음
- 공동근로복지기금: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근로복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기금을 설립/운영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5년 도입
- 상생형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지원 사업 (2015년~)
 -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협력업체 근로자 대상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사내기금에 지출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매년 최대 2억원 한도로 지원
 -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기금과 대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중소기업 공동기금에 신청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최대 5년간 2~20억원 한도로 차등 지원
 - 2024년 사업예산 233억원; 1인당 지원한도는 고용노동부 기업체 노동비용조사의 300인 미만 사업장 법정외 복지비용⁶⁾의 50%

6) 2022년 기준 월평균 13.7만 원 (법정의 복지비용에는 주거, 건강/보건, 식사, 교통/통신, 보육 지원, 보험료 지원, 자녀 학비보조, 휴양/문화/체육/오락비용 등이 해당)

□ 특징

- 정부 지원과 사업주 참여로 사업 활동의 잉여를 활용해 기금 조성, 조성된 기금은 노사 공동으로 운영
 - 사업장 규모에 따른 격차 증가로 개별 사업장을 넘어선 공동기금 마련 및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 목적의 프로그램 운영
 - 주택 신축·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자금 대출
 - 장학금·재난구호금의 지급, 기타 생활 원조
- ☞ 노동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사업주와 정부, 지자체 기여를 통해 재원 마련

□ 관련 현황

- 법정외 복지비용 격차 심화
 - 2012년 대기업의 65.1% 수준이던 중소기업 법정외 복지비용이 2022년 34.1%까지 하락; 1980년대에는 80% 수준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 300인 미만 중소기업과 300인 이상 기업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복지비용은 13.7만 원 대 40.1만 원으로 3배 수준으로 차이남
- 사내·공동 근로복지기금 현황 (2022년 기준)
 - 기금수/수혜대상은 ('18년) 1,672개/160만 명 → ('22년) 2,914개/195만 명으로 증가

표 15. 사내·공동 근로복지기금 현황 (2022년 기준)

구분	전체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
기금 수	2,914개	2,427개	487개
기본재산	9조 314억 원 (기금 당 31억 원)	8조 7,336억 원 (평균 36억 원)	2,978억 원 (평균 6억 원)
수혜대상 근로자수	1,947천 명 (인당 464만 원)	1,763천 명 (평균 495만 원)	184천 명 (평균 162만 원)

* 고용노동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현황 ('22 운영상황보고서 제출 기준)

표 16. 유관 프로그램 비교

구분	마이크로 크레딧	서민금융 (소액신용대출)	공제대출 (적립형공제)	노동복지 (근로복지기금)
목적	저소득층 소득창출기반 강화 지원 빈곤퇴치, 경제발전, 소득분배개선 추구	1금융권에서 신용대출 등 자금 조달이 어려운 서민을 대상으로 생계비, 창업, 자영업 운영, 대환자금 등의 목적에 필요한 금융 공급	공동체 구성원들이 일정한 금액을 각출하여 서로 협력하여 위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분담하고 해결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 목적의 프로그램 운영
대상	저소득 영세 자영업자, 창업과 소규모기업 운영 지원	특정 수준 이하의 연소득, 개인신용평점 혹은 중위소득을 가지고 있는 서민 중 금융공급이 필요한 자	회원 및 조합원	노동자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금 공급과 함께 경영 관련 기술/지원 제공 (비금융 지원 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금융 성격의 금융공급 금융복지 상담 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립형 공제를 통한 목돈마련 지원 생활자금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자금, 장학금 대출 재난구호금, 생활원조 등
재원	민간 기업이나 독지가의 기부금 정부/지자체 기금 활용	금융권 출연금 또는 휴면금융자산 활용	회원 및 조합원 납부금 정부/지자체가 사회안전망 확충 위해 매칭 지원하는 사례 존재	사업주 참여로 사업활동의 잉여를 활용해 조성 정부 매칭 지원으로 사업주의 기금 조성 독려
사례	사회연대은행, 신나는조합, 아름다운재단 등	서민금융진흥원, 기업·은행·미소금융재단 등	노란우산공제, 과학기술인공제회, 교직원공제회 등	각종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공단 등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빈곤층의 경제적 자립(자활) 지원 프로그램 중 일부로 실행하는 소액신용대출 프로그램 제3섹터 주도, 관계자본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와 은행에서 신용도와 소득이 낮은 금융소비자를 위해 마련한 포용금융 정책 신용공급 중심 접근으로, 공공보증에 기반해 은행대출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의 일정 부분을 비축하고 자원을 공유화(pooling)해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는 프로그램 상호성에 기반한 결사체 구조에서 나오는 가치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성된 기금은 노사 공동으로 운영 사업장 규모에 따른 격차 증가로 개별 사업장을 넘어선 공동기금 마련 및 상생협력 프로그램 요구 증가

나. 유관 프로그램 기반 동행 대출 프로그램 성격 검토

□ 마이크로크레디트

- 저소득층에 대한 소규모 무담보 대출 서비스로 국내에서는 저소득층의 창업과 소규모 기업 운영 지원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나 그 의미가 확대되며 마이크로파이낸스,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포용적 금융 시스템을 포괄하는 경향성을 보임
 - (유사점) 외부 자금(기부금)을 조달하여 운영하는 마이크로크레디트 운영 방식과 동일하며 마이크로크레디트의 대상은 저소득, 저신용자로 소득이 낮고 안전망이 미약한 공익활동가 동행 조합원의 성격과 유사함 또한 포용적 금융 시스템으로 금융 제공이라는 목적이 동일함
 - (차이점) 마이크로크레디트는 창업자금 또는 소규모 기업 운영 지원 중심으로 자금이 공급되고 있으며 일자리 및 소득 창출을 위한 자금으로 그 용도가 제한적으로 공급되고 있음

□ 서민금융(소액신용대출)

- 소득과 신용도가 낮아 제1금융권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을 대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제도로 ‘서민금융진흥원’ 중심의 정책 금융 위주로 진행되고 있음 진흥원의 심사를 통한 보증서 발부 및 보증서 담보부 협약 금융기관에서의 소액신용대출이 진행되는 형태로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 및 민간 사업수행기관을 통한 창업 및 운영자금 형태 일부 운영 중
 - (유사점) 대상이 저소득, 저신용자로 소득이 낮고 안전망도 미약한 공익활동가 동행 조합원의 성격과 유사하며 금융 소외 계층에게 자금을 공급한다는 목적에 유사점이 있음
 - (차이점) 서민금융은 공급 주체가 정부 중심으로 저소득, 저신용자에 한하여 자금이 공급되고 있으며 개인이나 기업에게 자금을 직접 공급하는 것이 아닌 수탁기관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 도매 역할임

□ 공제 대출(적립형 공제)

- 상호부조와 협력의 원칙에 근거한 것으로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여 위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분담하고 해결하려는 목적을 가짐. 상호 부조와 공동체 정신을 통해 위험 관리와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음
 - (유사점) 취약계층이 스스로 만드는 안전망의 개념으로 공동의 목적이나 성격을

가진 공동체가 운영하는 점과 사회적 안전망으로의 역할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음

- (차이점) 공제의 경우, 구성원이 각출하여 스스로 조성한 기금을 기본으로 활용하여 운영된다는 점이 소액대출을 제외하고 대부분 외부 자금 조달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동행 대출 프로그램과의 가장 큰 차이점임

□ 노동복지(근로복지기금)

- 노동 환경에 따라 중소기업 법정외 복지비용 격차가 심화 됨에 따라 정부 지원과 사업주 참여로 기금을 조성, 조성된 기금은 노사 공동으로 운영하며 노동자의 생활 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 목적의 프로그램을 운영(자금 대출, 생활 원조 등) 하고 있음
 - (유사점) 근로복지 상황이 열악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복지기금 설치를 통해 근로자의 복지를 보장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기금으로 그 목적이 유사하다 할 수 있음
 - (차이점) 기업주의 의지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개인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출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도매 규모의 사업임

□ 정리

- 위에서 살펴본 유관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현재 동행의 대출 프로그램의 성격을 분류한다면, 외부자금(기부금)에 의한 소규모 무담보 대출서비스로 마이크로크레딧과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 동행은 창립 당시 공제회를 지향하였으나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창립하였고 대출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관리가 매우 어려운 공제회 방식을 적용하기는 부적절하였음
 - 동행은 그동안 대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대출사업 운영, 관리 노하우를 습득하였고 대출 프로그램 지속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자금 조달 노력을 하고 있음
 - 향후 대출 프로그램 기획 시 동행의 초기 지향점과 협동조합으로서의 자조 조직 특성을 반영하여 마이크로크레딧과 공제회의 성격을 동시에 지향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각각의 상품을 설계, 운영할 수 있음
 - 또한 소득이 불안정한 공익활동가를 위한 대출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손실에 대한 보완 장치가 필요함
 - 이를 위해 유관기관인 사회연대은행, 노동공제연합 풀빵, 동행이 협력하여 다양한 관점을 고려한 효과적인 대출프로그램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음

다. 시사점

□ 분야별 발전 추이

- (금융 사각지대 자금 공급) 마이크로크레디트와 서민금융은 소액신용대출이라는 점에서 같지만, 전자는 제3섹터가 주도하고 양보다 질 중심, 사례 중심이라면, 후자는 금융권과 정부가 협력해 이를 제도화한 것으로, 시스템적이고 규모화된 해법
- (사회안전망 확충 & 좋은 삶 추구) 공제대출과 노동복지 대출은 일하는 사람들의 사회안전망 및 복지 확충이라는 면에서는 유사하지만, 공제는 당사자 간 상호성에 기반한 결사체 중심이라면 노동복지는 노-사 간 협약의 결과로 운영되는 것이 차이

구분	공통점	차이점
마이크로 크레디트	금융 사각지대 생활자금 용자 (소액신용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 창업 지원 등을 통한 경제적 자립 지원 ▪ 제3섹터 주도, 비금융 지원 병행 ▪ 양보다 질, 사례 중심, 지역적 접근, 관계금융 특성 ▪ 국내에서는 공익성 있는 자금을 활용하며 낮은 이자율이 관행화되어 있지만(0~3%), 다른 나라에서는 사업비용이 충분히 반영된 이자율 책정 (8~20% 수준) ▪ 별도의 민간 지원금이나 정부 보조금 없이는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서민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금융의 사각지대에 대한 정책적 대응 ▪ 은행권과 정부 주도하는, 시스템적이고 규모화된 해법 ▪ 공정성과 효율성 중시, 관료주의 논리 ▪ 일정 수준의 위험을 반영한 이자율 책정 (ex. 근로자햇살론 11.5% 이내)
공제대출 (적립형 공제)	사회안전망 & 좋은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 복지의 사각지대 중심으로 발전 (공직 종사자, 건설근로자, 소상공인 등) ▪ 법정 복지와 유사한 사회안전망 기능 중심 구성 (특히 퇴직금 명목의 상품이 많음) ▪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는 개인들의 자산형성을 독려 ▪ 결사체 특성이 강한 조직일수록 규모는 작지만 경조사 등을 위한 상호부조(소멸성) 공제 병행
노동복지 (근로복지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 주도로 사업 잉여를 활용해 기금 조성, 운용 과정에 노사 참여; 정부는 기금 조성을 독려하고 지원 ▪ 법정 외 복지 분야 수요 중심 구성 (주택, 장학금 등) ▪ 특히, 대-중소 규모 사업장 간 법정 외 복지 격차 확대, 정부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지원

그림 12. 유관 프로그램 분야별 발전 추이

□ 시사점 - 동행 대출 방향성과 분야별 발전 추이 종합 고려

- 동행 대출사업은 공익 목적의 외부자원을 개발해 활용하는 마이크로크레딧 모델로 시작해 발전해 옴
 - 소액신용대출 분야는 민간이 주도하는 마이크로크레딧으로 시작되었으나, 정부와 은행권이 주도하는 서민금융이 제도화되면서 다소 주변화된 상태
 - 국내 마이크로크레딧의 낮은 이자율을 고수하는 정책은 ①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흡수하지 못해 수행기관의 존립에 위협이 되고, ② 자금 공급자에 대한 의존도를 지속적으로 심화시키며, ③ 사업의 유연성을 떨어뜨려 수혜자 범위를 제약하고 사회가치 창출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는 것으로 관찰됨
 - 비록 낮은 이자율에 대한 조합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지만,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관계금융의 특성을 살린 신속하고 간편한 심사, ▷만기 조정 등 관료주의에서 벗어난 유연한 운영, ▷금융소비에 대한 종합적 진단과 처방 등으로 옮겨가면서 이자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승시키는 접근이 필요함
- 잉여를 축적하지 않는 비영리 조직의 운영 관행을 감안하면, 동행이 노사협력에 기반한 근로복지기금 모델로 성장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조합원 상호성에 기반한 공제대출 모델로 성장해 가는 것이 바람직
 - 국내에서 공제는 법정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소득의 일부를 활용해 미래의 위협에 대비하는 자금을 비축하도록 지원하고, 이 자원을 공유(pooling)함으로써 위험 대응력을 높이려는 접근으로 널리 활용됨
 - 적립형 공제를 통해 자금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긴급한 자금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개인이 비축한 자금을 털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 공제대출의 기본 구조⁷⁾
 - 조합원 출자금에 기반한 소액대출 외에 적립형 공제 등을 도입하여, 공제조직에 어울리는 대출 사업으로 발전시켜 가는 것이 바람직
-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대출 프로그램의 활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합원의 대출 수요를 건전한 방향으로 형성하고 해소하기 위한 촉매제로 동행대출 프로그램의 정체성과 포지션을 정립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동행 대출 신청자의 상당수가 카드론, 서민금융 등 다중채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수요에 대해 동행 자체 프로그램만으로 실효성 있게 대응하기 어려움
 - 조합원 규모와 증가추세 및 대출 수요에 비해 현재 보유한 대출 재원이 제한적이

7) ROSCA(Rotating Savings and Credit Association)라 불리는 형태로 개발도상국에서 쉽게 볼 수 있지만 선진국에서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나타남. 저축을 통한 경제적 자립이라는 강력한 도덕적 토대에 기반하고, 경제적 기능 외에 친교의 기능도 가지고 있음.

므로, 당분간 동행 대출은 “소액신용대출”로서 정체성을 더욱 확실히 하고 개인별 대출 한도와 용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소액신용대출로서 유용성을 높이려면, “소액”의 자금 수요가 발생했을 때 가급적 카드론 등 다른 대출로 넘어가지 않고 동행 대출을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주기를 단축하고 제대로 알리는 것이 필요함
- 다중 채무자의 경우에는 개인의 금융 생활에 대한 상담과 진단, 처방이 선행되고, 활용 가능한 대출 프로그램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면서 개인 채무에 대한 조정과 개선을 원활하게 하는 용도로 동행 대출이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 (금융상담, 신용회복, 서민금융 등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원)

제3장. 대출 프로그램 개선 방안

1. 대출 프로그램별 현황

가. 소액대출 프로그램

- 개요
 - 기간: 2017년 ~ 현재
 - 목적: 조합원의 상호복리 증진, 긴급자금 지원을 위한 대출프로그램
 - 대상: 동행 조합가입 24개월 이상 조합원
 - 금액: 1인 최대 1천만원
 - 이율: 연 3% (연체 2개월 이후부터 4.5% 연체이자 부과할 수 있음)
 - 상환: 최대 36개월 이내 원리금 균등상환

○ 관련규정

- 동행 정관 제56조(소액대출)

- ① 조합은 상호복리 증진을 위하여 제55조의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액대출을 할 수 있다.
- ② 조합원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한 조합원에 한해서 대출자격을 가진다.
- ③ 제1항에 따른 소액대출을 할 때 조합원 1인당 한도는 출자금 총액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가 능하나 1천만원 이내로 한다.
- ④ 소액대출 이자율은 3%로 한다.
- ⑤ 소액대출 연체이자율은 소액대출이자율의 1.5배 이하로 한다.
- ⑥ 대출 종류, 대출 종류별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대출절차와 상환 등 소액대출 사업 운영에 대 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단, 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은 계약 기간 동안에는 계약 당시의 이자율로 정한다.
- ⑦ 조합은 정기적으로 대출 조합원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며, 대손충당의 구체적 적립수준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 으로 정한다.
- ⑧ 소액대출 사업은 제55조에 따른 주 사업 및 기타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 동행 소액대출프로그램 규정

○ 신청 및 선정 현황

표 17. 소액대출 신청·선정 현황

구분	신청		선정		신청금액대비 선정비율(%)
	건수	금액(원)	건수	금액(원)	
2017	5	36,000,000	3	20,000,000	55.6
2018	10	68,000,000	5	30,000,000	44.1
2019	9	86,000,000	3	30,000,000	34.9
2020	6	60,000,000	4	24,000,000	40.0
2021	5	50,000,000	3	30,000,000	60.0
2022	6	54,000,000	5	40,000,000	74.1
2023	46	454,000,000	9	55,000,000	12.1
2024	10	85,000,000	7	50,000,000	58.8
합계	97	893,000,000	39	279,000,000	31.2

나. 청년공익활동가 안전망기금 대출 프로그램

○ 개요

- 기간: 2018년 ~ 현재
- 목적: 학자금 대출로 시작된 청년 부채의 심각성과 신용도 하락에 따른 생활의 어려움, 고이율 대출전환과 긴급 생활 자금 등을 저이율(1%) 대출로 부담 완화시켜 생활안정과 공익활동의 지속성 제고
- 대상: 20세 이상 39세 이하 공익활동가, 조합가입 2개월 이상 조합원
- 금액: 1인 최대 2천만원
- 이율: 연 1% (연체 2개월 이후부터 3% 연체이자 부과할 수 있음)
- 상환: 최대 60개월 이내 원리금 균등상환

○ 관련규정

- 동행 정관 제55조(사업의 종류)

-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 이어야 한다.
1.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제안, 제도개선, 기금 조성, 조사연구, 자산화, 인프라구축 사업 등 시민사회 교류 촉진 사업
 2.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 하는 사업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공익활동 촉진사업
 3. 공익활동가 자금 지원 등 사회·경제적 지원사업을 통한 공익활동가 지속가능성 제고 및 시민사회 역량 강화 사업
 4. 시민교육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부대사업

- 청년공익활동가 안전망 기금사업 운용규칙

○ 신청 및 선정 현황

표 18. 청년공익활동가 안전망기금 대출 신청·선정 현황

구분	신청		선정		신청금액대비 선정비율(%)
	건수	금액(원)	건수	금액(원)	
2018	47	782,720,000	42	499,720,000	63.8
2019	62	1,000,000,000	48	500,000,000	50.0
2020	67	969,000,000	50	471,600,000	48.7
2021	62	1,062,694,000	40	473,840,000	44.6
2022	52	955,270,000	29	282,500,000	29.6
2023	79	1,366,718,355	43	412,700,000	30.2
2024	68	925,000,000	32	359,000,000	38.8
합계	437	7,061,402,355	284	2,999,360,000	42.5

다. 중장년 활동가 안전망 든든기금 대출 프로그램

○ 개요

- 기간: 2020년 ~ 현재
- 목표: 중장년 공익활동가의 긴급자금 지원을 위한 대출프로그램
- 대상: 40세 이상 공익활동가, 조합가입 3개월 이상 조합원
- 금액: 1인 최대 1천만원
- 이율: 연 1% (연체 2개월 이후부터 3% 연체이자 부과할 수 있음)
- 상환: 최대 36개월 이내 원리금 균등상환

○ 관련규정

- 동행 정관 제55조(사업의 종류)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 이어야 한다.
1.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제안, 제도개선, 기금 조성, 조사연구, 자산화, 인프라구축 사업 등 시민사회 교류 촉진 사업
2.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 하는 사업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공익활동 촉진사업
3. 공익활동가 자금 지원 등 사회·경제적 지원사업을 통한 공익활동가 지속가능성 제고 및 시민사회 역량 강화 사업
4. 시민교육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부대사업

○ 신청 및 선정 현황

표 19. 중장년 활동가 안전망 든든기금 대출 신청·선정 현황

구분	신청		선정		신청금액대비 선정비율(%)
	건수	금액(원)	건수	금액(원)	
2020	60	269,900,000	19	178,000,000	65.9
2024	67	659,000,000	17	108,000,000	16.4
합계	127	928,900,000	36	286,000,000	30.8

라. 긴급자금 대출 시범사업

○ 개요

- 기간: 2016년 ~ 2019년
- 목적: 조합원들의 긴급한 생활자금, 전세보증금 등 누적된 가계부채 완화
- 대상: 20세 이상 공익활동가, 동행 조합가입 3개월 이상 조합원
- 금액: 1인 최대 1천만원
- 이율: 연 3% (연체 2개월 이후부터 4.5% 연체이자 부과)
- 상환: 최대 36개월 이내 원리금 균등상환

○ 관련규정

- 동행 정관 제55조(사업의 종류)

-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 이어야 한다.
1.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제안, 제도개선, 기금 조성, 조사연구, 자산화, 인프라구축 사업 등 시민사회 교류 촉진 사업
 2.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 하는 사업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공익활동 촉진사업
 3. 공익활동가 자금 지원 등 사회·경제적 지원사업을 통한 공익활동가 지속가능성 제고 및 시민사회 역량 강화 사업
 4. 시민교육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부대사업

- 동행 긴급자금대출프로그램 운용규칙

○ 신청 및 선정 현황

표 20. 긴급자금 대출 시범사업 신청·선정 현황

구분	신청		선정		신청금액대비 선정비율(%)
	건수	금액(원)	건수	금액(원)	
2016	9	45,000,000	8	35,000,000	77.8
2017	17	106,000,000	14	86,000,000	81.1
2018	15	124,000,000	13	99,000,000	79.8
2019	4	50,000,000	3	30,000,000	60.0
합계	45	325,000,000	38	250,000,000	79.9

마. 코로나19 위기 극복 특별 용자사업

○ 개요

- 기간: 2020년
- 목표: 코로나19 상황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영리단체와 활동가에게 특별용자 함으로써 긴급한 경제적 위기 완화에 도움
- 대상: 서울 소재 비영리단체, 서울 거주 또는 서울 소재 비영리단체 종사자, 동행 조합가입 3개월 이상 조합원
- 금액: 비영리단체 최대 2천만원, 활동가 최대 1천만원
- 이율: 연 1% (연체 2개월 이후부터 3% 연체이자 부과할 수 있음)
- 상환: 최대 36개월 이내 원리금 균등상환

○ 관련규정

- 동행 정관 제55조(사업의 종류)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 이어야 한다.
1.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제안, 제도개선, 기금 조성, 조사연구, 자산화, 인프라구축 사업 등 시민사회 교류 촉진 사업
2.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 하는 사업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공익활동 촉진사업
3. 공익활동가 자금 지원 등 사회·경제적 지원사업을 통한 공익활동가 지속가능성 제고 및 시민사회 역량 강화 사업
4. 시민교육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부대사업

○ 신청 및 선정 현황

표 21. 코로나19 위기극복 특별 용자 신청·선정 현황

구분	신청		선정		신청금액대비 선정비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비영리단체	26	495,000,000	21	345,000,000	69.7
활동가	89	651,500,000	77	531,500,000	81.6
합계	105	1,146,500,000	98	876,500,000	76.5

표 22. 동행 대출프로그램 총괄표

구분	진행 사업			종료사업	
	가. 소액대출 프로그램	나. 청년공익활동가 안전망 사업	다. 중장년 든든기금 대출 프로그램	라. 긴급자금대출 시범사업	마. 코로나19 위기 극복 특별용자 사업
사업 기간	2017~	2018~	2020~	2016~2019	2020
지역	전국	전국	전국	전국	서울
신청 자격	- 동행 가입 24개월 이상 조합원 (납부일 기준)	- 20세 이상 40세 미만 공익활동가 - 동행 가입 2개월 이상 조합원 (납부일 기준)	- 40세 이상 공익활동가 - 동행 가입 3개월 이상 조합원 (납부일 기준)	- 20세 이상 공익활동가 - 동행 가입 3개월 이상 조합원 (납부일 기준)	- 서울 거주 또는 서울 소재 비영리 단체 및 상근자 - 동행 가입 3개월 이상 조합원(납부일 기준)
자금 용도	- 학자금 대환 - 고금리 대환 - 주거비 - 생계비	- 학자금 대환 - 고금리 대환 - 주거비 - 생계비	- 학자금 대환 - 고금리 대환 - 주거비 - 생계비	- 고금리 대환 - 주거비 - 생계비	- 단체 고용유지 및 운영비 - 긴급생활자금
대출 금액	인당 최대 1천만원	인당 최대 2천만원	인당 최대 1천만원	인당 최대 1천만원	인당 최대 1천만원 단체 최대 2천만원
금리	연 3%(고정금리) 연체이자 4.5%	연 1%(고정금리) 연체이자 3%	연 1%(고정금리) 연체이자 3%	연 3%(고정금리) 연체이자 4.5%	연 1%(고정금리) 연체이자 3%
상환 기간	- 24개월 - 36개월	60개월	36개월	36개월	36개월
상환 방법	원리금균등상환 (거치 기간 없음)				
진행 절차	2단계 심사(서류, 최종) - 약정 - 대출				
심사 기간	접수 마감일로부터 약 4주				
신청 기간	수시 (자금 소진시까지)	연 2회(상하반기)	연 2회(상하반기)		

2. 대출 프로그램 설계 개선 방향

가. 대상 (신청자격)

- 현재 : 최저 기준은 동행 가입기간 2개월 이상

표 23. 동행 프로그램별 대출 신청 자격

구분	가. 소액대출프로그램	나. 청년공익활동가 안전망기금사업	다. 중장년 튼튼기금대출프로그램
신청자격	- 동행 가입 24개월 이상 조합원(납부일 기준)	- 20세 이상 40세 미만 공익활동가 - 동행 가입 2개월 이상 조합원(납부일 기준)	- 40세 이상 공익 활동가 - 동행 가입 3개월 이상 조합원 (납부일 기준)

- 개선안 : 가입기간 최소 12개월 이상⁸⁾으로 상향조정

- 동행의 대출프로그램 신청자격 중 동행 가입 기간은 조합원의 공동체 의식, 참여도 등은 협동조합의 호혜금융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정성 정보임. 동행은 조합원으로부터 수집 가능한 정성적 신용정보를 적극 수집, 활용하는 것이 필요
- 이는 대출의 문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조합과 조합원의 관계성을 본 대출프로그램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조합과 조합원의 신뢰 관계의 구축, 정상 상환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음
- 현재 동행의 전체 조합원 가입 기간이 대출프로그램 운영 초기에 비해 증가한 점, 현재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신청 자격이 최소 6개월 이상인 점, 기존 대출프로그램 이용자들의 신청일 기준 조합 가입기간 평균이 최소 1년 6개월 이상인 점(아래 <참고자료 1>) 등을 고려해야 함
- 또한 대출프로그램의 경우, 대출 이후 상환기간까지 포함한다면 장기적인 관계성이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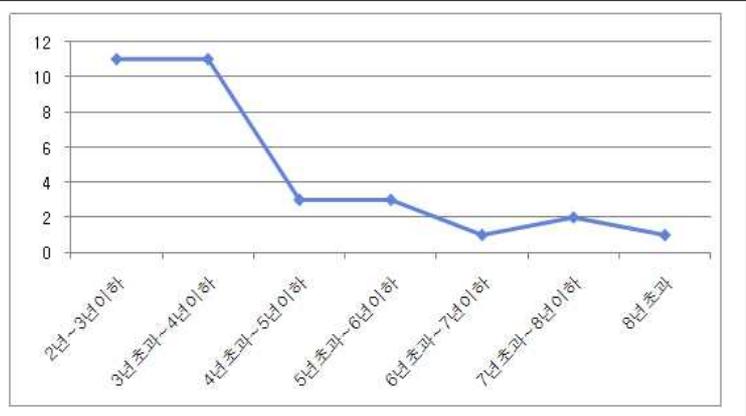
※ 단, 이후 설계되는 대출프로그램과 재원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자의 가입 기간 조건에 예외적 허용을 두어 필요한 대상에게 적절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함

8) 소액대출 프로그램은 현행을 유지하여도 무방함

참고자료 1. 동행 각 대출프로그램별 참여자 조합 가입기간 현황

* 소액대출: 평균 3년 11개월

구분	인원(명)
2년이상~3년이하	11
3년초과~4년이하	11
4년초과~5년이하	3
5년초과~6년이하	3
6년초과~7년이하	1
7년초과~8년이하	2
8년 초과	1
합계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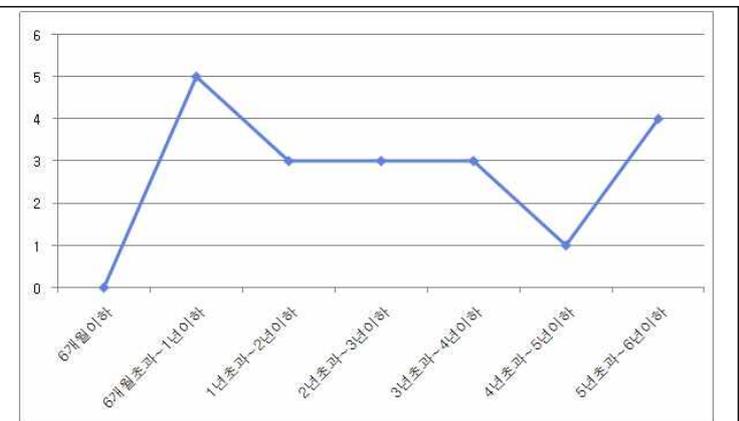
* 청년활동가 안전망기금 대출: 평균 1년 6개월

구분	인원(명)
6개월이하	97
6개월초과~1년이하	47
1년초과~2년이하	51
2년초과~3년이하	45
3년초과~4년이하	19
4년초과~5년이하	13
5년초과~6년이하	3
6년초과~7년이하	4
7년초과	1
합계	2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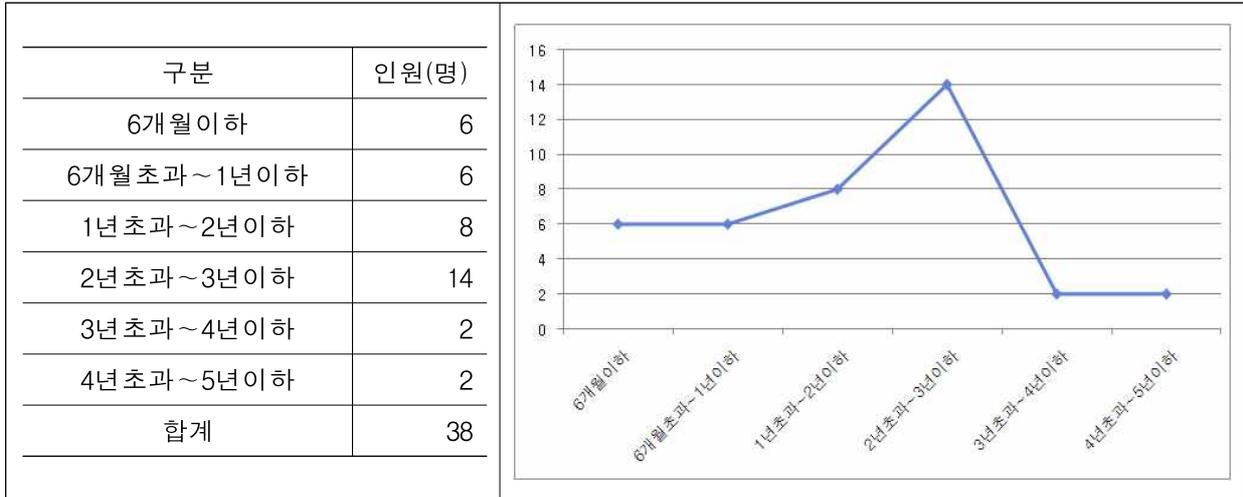


* 중장년활동가 든든기금 대출: 평균 2년 9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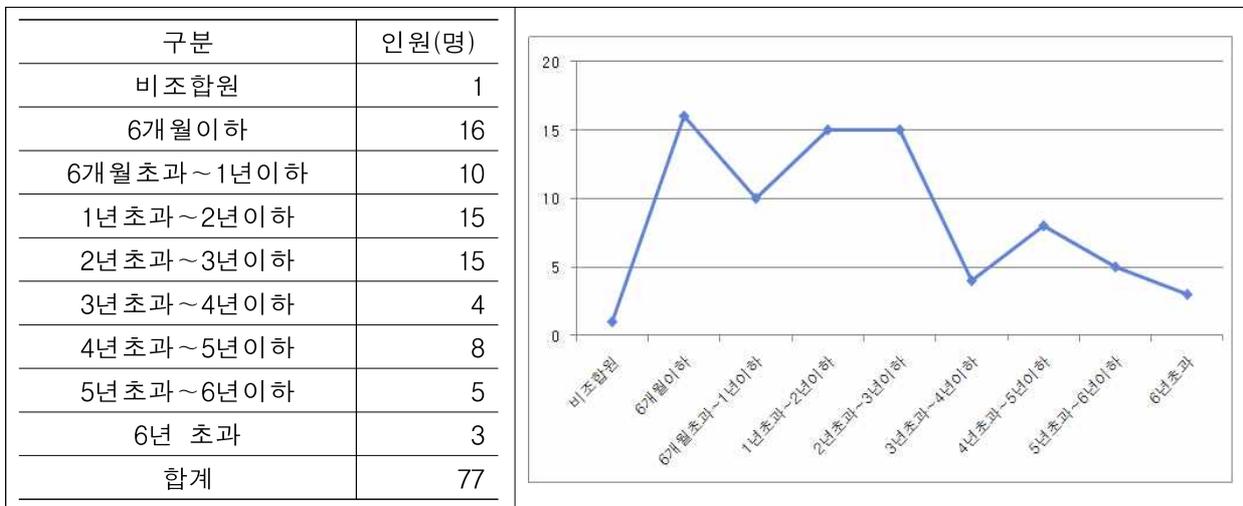
구분	인원(명)
6개월이하	0
6개월초과~1년이하	5
1년초과~2년이하	3
2년초과~3년이하	3
3년초과~4년이하	3
4년초과~5년이하	1
5년초과~6년이하	4
합계	19



* 긴급자금 대출: 평균 1년 9개월



* 코로나19 비영리특별융자: 평균 2년 3개월



나. 용도

- 현재: 학자금 대환, 고금리 용자 대환, 주거비(전월세 보증금), 생계비
- 개선안 : 학자금 대환 용도 제외
 - 학자금 대출 전환의 경우, 현재 한국장학재단 대출 금리가 1%대의 초저금리로 운영되고 있어 해당 용도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다. 신청 주기

- 현재: 연 2회(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진행
- 개선안: 소액대출은 분기별 1회로 확대 실시
 - 동행 대출사업이 연 2회(상반기 1회, 하반기 1회)에 진행됨에 따라 긴급한 생계비 필요시 시의적절하게 활용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 필요. 주로 소액대출이 긴급성을 요하므로 대출 시기를 분기별 1회로 확대 실시 제안

라. 신청 금액

- 현재 : 소액대출 1인 최고 1,000만 원, 청년안전망기금 대출 1인 최고 2,000만 원, 증장년든든기금 1인 최고 1,000만 원
- 개선안 : 소액대출 1인 최고 1,000만 원, 1회 최고 500만 원
청년안전망기금 대출 1인 최고 1,000만 원
 - 소액대출 전체 규모에 한계가 있고 긴급한 사안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소액대출의 한도를 1인 최대 1,000만원, 1회 최대 500만원으로 조정
 - 동행 대출사업 전체적으로 평균 대출 규모를 낮추어 대손 발생 등 집중 위험을 감소시키고 필요시 추가로 대출하는 방식을 고려하여 각 사업별 1인 최고 한도는 1,000만원으로 하고, 동행 전체 대출사업 참여 한도는 2,000만원으로 설정

마. 금리

- 현재 : 활동가 대출 연 1%, 소액대출 연 3%

표 24. 동행 대출프로그램 금리

구분	가. 소액대출프로그램	나. 청년공익활동가 안전망기금사업	다. 중장년 든든기금대출프로그램
금리	연 3%(고정금리) 연체이자 4.5%	연 1%(고정금리) 연체이자 3%	연 1%(고정금리) 연체이자 3%

- 개선안 : 최소 금리 3%

- 청년공익활동가 안전망사업과 중장년 든든기금 대출프로그램의 경우 외부 상환의 의무가 없는 채원조달로 연 1% 초저금리로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 대출프로그램의 특성상 이후 발생할 대위변제에 따른 대손충당금 사전 적립 필요함
- 동행 대출사업의 장점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청년공익활동가 안전망기금, 중장년 든든기금, 코로나19비영리대출 등 모든 대출사업의 참여자들이 ‘이자율이 낮아서’를 가장 높게 선택하였음. 동행 조합원들은 금리가 낮다는 이유로 동행 대출사업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금리가 낮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공익활동가들에게 장점일 수 있으나, 시중 금리와의 격차가 너무 큰 대출에 익숙해질 경우 제도권 금융에 접근도가 더욱 떨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서민금융상품을 포함한 유사 사업을 동행과의 대출프로그램과 비교하였을 때, 동행 대출프로그램의 금리가 현저하게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아래 <참고자료 2>) 이러한 시중금리와의 과도한 격차를 고려하여 공익활동가들이 궁극적으로 제도 금융권으로 복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함
- 또한 대출 상환 완료까지의 프로그램 운영비용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금리를 설정해야 함.(아래 <참고자료 3>) 대출 이자 수입은 대손충당금 적립과 사업운영비용으로 활용하도록 사용처를 제한하고 별도 관리해야 함
- 위와 같은 요건을 반영할 때 적정 금리의 설정이 필요함. 최소 금리를 3%로 하되 각 대출프로그램의 성격(대상, 자금처 등)에 따라 프로그램 기획 당시 시중 대출금리, 가계 대출 평균 금리 등을 고려하여 설정할 것을 권함
- 현재 동행은 대출사업 규정에서 대출 이자 수치를 명시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매년 사업 계획 수립 시 이사회에서 시중 금리를 고려하여 적정한 금리를 정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경

참고자료 2. 유사사업 비교

[서민금융진흥원 개인대출 사업 현황]

상품명	대상	대출금리	금리우대
햇살론유스	만 19세~34세,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3.5% ⁹⁾	
근로자햇살론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또는 신용평점 하위 20%이고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11.5% 이내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사회적 취약계층	3.0%	
소액생계비대출	신용평점 하위 20% 이면서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15.9%	연체 없이 성실 상환 시 상환 기간에 따라 금리 인하 → 최저 연 9.9%로 인하 * 6개월 마다 3.0%p 인하, 추가 대출시 연 12.9% 금리 적용
미소금융 -긴급생계자금	미소금융 창업·운영·시설개선 자금 대출을 12회차 이상 성실상환한 자	4.5% 이내	
민간사업수행기관 -생활안정지원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 대출	6.0%	

- 위의 사업 중 민간사업 수행기관을 통해 취약 계층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하는 사업은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또는 신용평점 하위 20% 이면서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계자금 대출프로그램으로 대상자 및 대출 한도 (인당 1천만원 이내), 자금 목적이 동행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출 사업과 유사함
- 또한 민간사업 수행기관은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하여 대출 자금을 마련하고, 대상자에게 재대출 하는 방식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이 설정한 최대 연이율 6% 이내에서 상품을 기획하여 대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기금 운영구조 또한 매우 흡사함

[서민금융진흥원 민간사업 수행기관 생활안정지원사업 상품 현황]

운영기관	상품명	대상	대출금리	금리우대
나눔과기쁨	직장인 생활안정자금	1)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2)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이면서 개인 신용 평점이 하위 2 근로자나 자영업자	연 6.0%	-
부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저소득층 및 일반 근로자, 자영업자 등을 위한 생활안정 신용대출프로그램		연 6.0%	-
신나는조합	사회적 경제 종사자 ¹⁰⁾ 융자사업		연 6.0%	연체 없이 성실 상환 시 매년 납입 이자의 50% 페이백 * 성실 상환 시 실금리 연 3%
재단법인 밴드	서민금융 생활안정분야 소액대출		연 3.0%	-

- 재단법인 밴드를 제외하고는 연 6.0%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재단법인 밴드는 3.0%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음. 신나는조합은 연 6.0%의 금리를 기본 적용하고 있으나 연체 없이 성실 상환시 매년 납입 이자의 50%를 페이백하여 줌으로 성실 상환을 하는 경우 실질금리가 연 3%가 되도록 설계하였음

참고자료 3. 대출 프로그램 운영비 고려

- 외부재원에 의한 대출프로그램의 경우 운영비를 기금 내에 포함 시켜 설계
 - 대출참여자들의 상환기간 동안 매년 일정 비율의 운영비를 사용하도록 설계
 - (예시) A기관 기금 100,000,000원이고 상환기간 3년일 경우 (운영비 5% 상정)

기금				상환원금				
연도	총기금	운영비	대출집행	2025	2026	2027	2028	2029
2025	100,000,000	5,000,000	95,000,000	31,666,667	31,666,667	31,666,667	0	0
2026	31,666,666	1,583,333	30,083,333	0	10,027,778	10,027,778	10,027,778	0
2027	41,694,444	2,084,722	39,609,722	0	0	13,203,241	13,203,241	13,203,241

9) 보증료율 제외한 대출금리

10)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이력 보유자, 사회적경제 분야 6개월 이상 근속 종사자

바. 상환기간

- 현재: 상환기간 최대 60개월

표 25. 동행 대출프로그램 금리 및 상환기간

구분	가. 소액대출프로그램	나. 청년공익활동가 안전망사업	다. 중장년 든든기금 대출프로그램
상환기간	36개월	60개월	36개월

- 개선안: 상환기간 최대 36개월 이내로 축소
 - 대출 상환 기간이 길어질수록 관리의 기간과 비용이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출 선정자 개별 대출 규모와 상환 여력에 따라 대출기간은 가급적 단기간으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함
 - 따라서 가급적 대출 상환 기간은 36개월 이내로 축소하되, 1인당 대출금액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하도록 함

사. 성실 상환¹¹⁾ 유도

- 현재: 해당 없음
- 개선안: 성실 상환 시 이자 감면, 대출 연체 시 배분지원사업 자격 제한
 - 대출의 최초 금리를 3%로 하더라도 성실 상환 시 2%로 감면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성실 상환 유도함. 연체이자율 부과보다 성실 상환시 이자율이 감소 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동행의 대출프로그램의 취지에 부합하며 대출자들에게도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임.
 - 동행의 경우 대출프로그램 이외에 기타 배분 지원사업을 운영하며 다양한 형태의 추가 지원을 하고 있음. 성실 상환 독려를 위한 방식으로 배분 지원사업 신청 시 대출 연체 중인 조합원은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통해 상환을 촉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음

11) 약정 기간 내 완납하는 것을 의미한다.

#1. 대출 프로그램 설계 개선안 종합

표 26. 동행 대출 프로그램 설계 개선안 종합

구분		현재	개선안
가. 신청자격 (조합가입기간)	소액	24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청년	2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중장년	3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나. 용도		학자금대환, 고금리대환, 주거비, 생계비	고금리대환, 주거비, 생계비
다. 신청주기		연 2회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소액대출은 분기별 1회 (연 4회) 진행
라. 신청금액	소액	1천만원	1인당 최고 1천만원 1회당 최고 5백만원
	청년	2천만원	1인당 최고 1천만원
	중장년	1천만원	현행 유지
마. 금리	소액	연 3%	- 상환기간, 대출규모, 시중금리, 운영비 등을 감안하여 이자율 3% 로 상향 조정하여 적용 * 이자 수입은 대손충당금 적립과 운영비로 사용처 제한하여 관리
	청년	연 1%	
	중장년	연 1%	
바. 상환기간	소액	36개월 이내	- 상환기간은 관리비용을 고려하여 단기간(36개월)으로 조정
	청년	60개월 이내	
	중장년	36개월 이내	
사. 성실 상환 유도		해당사항 없음	- 최초 금리를 3%로 하더라도 성실 상환 시 2%로 감면 조치 - 대출 연체 중인 조합원은 다른 지원사업 신청 자격 제한

부채 현황	※ 대출신청용도에서 「고이출전대출」로 신청시 본인의 부채현황을 상세히 적어주세요. (은행대출, 현금서비스, 카드대출, 보험 약관대출 등 포함)					
	구분	대출기관	대출금액	대출잔액	이자율(%)	대출용도
	1					
	2					
	3					
	4					
상환 계획	※ 대출심사시 고합원님의 대출금 사용계획과 상환계획을 알려드리고 합니다. 대출사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출이니, 간략하게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출금 사용계획 2. 대출금 상환계획					
<p>신청자 본인은 공익활동가 중장년 전문대출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서 각 항목을 사실대로 정확히 기재하였으며 허위 과장 또는 대의 감정이 확인될 경우 지원 승인 취소나 대출금 회수 등 기원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본인은 심사 과정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4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명 _____ (서명 또는 인)</p>						

그림 14. 동행 대출사업 신청서 양식

○ 개선안: 신청자의 가계 월 소득과 월 지출 작성칸 삽입

- 고정비용과 실 상환액 규모 등이 파악되어야 대환 대출 했을 때의 효과성이나 추가적으로 동행 대출이 실행되었을 때 예상되는 월상환액 규모를 예측하여 실제 상환 가능성이 있는 수준인지 대출 적정성을 고려할 수 있음

나. 제출서류 목록

○ 현재: 신청서식 기록에 대한 증빙자료로 구성

- 서류접수 시 제출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음

- 신청서
-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재직기관 추천서
- 재직증명서 또는 활동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분)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재직기관 고유번호증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대출기관별 부채잔액증명서(이율 포함) _ 고이율 전환 대출 신청 시 제출

○ 개선안: 주민등록등본을 주민등록초본으로 변경, 개인신용보고서 추가

-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잦은 주소 변경 이력, 개명 이력 또는 말소 이력과 같은 대출신청자 개인의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 확인할 것을 권고함
 - 채무 불이행시 채권자의 권한으로 주민등록 말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말소 이력의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필수 검토 필요함
 - 잦은 이사는 직장 근속과도 연관 지을 수 있으며 이어나 개명의 이유가 채무와 관련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정량적인 신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신용보고서(KCB, NICE), 세금 체납 여부 등 해당 용도에 따른 증빙을 추가로 취합한다면 대출 여부 및 적정 한도를 심사하는데 활용할 수 있음
- 신청서 상 개인신용정보 조회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대출참여자 스스로의 재정 관리 차원에서도 필요한 사항임
- 다만, 정량적 신용정보만을 기반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적 신용 정보와 함께 검토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2. 심사

가. 사무처 서류검토

- 현재: 기본 신청자격 요건을 확인, 미비 서류의 보완
- 개선안: 신청서와 제출서류와의 동일 여부를 확인, 필요 서류의 적합성 검토. 평가표를 활용하여 1차 검토 진행
 - 민간사업 수행기관의 대출프로그램에서는 서류 심사 단계에서 취합되는 자료를 기반으로 대출 신청자의 신용점수, 신용상태(개인회생, 파산면책, 연체 여부, 채무 불이행자 등록여부 등) 기보유 대출금액 규모, 월 상환금액 규모 등을 정량 지표로 설정, 활용하고 있음
 - 동행 사무처가 신청서류의 기본자격요건, 신뢰도, 상환가능성, 대출적합성 등을 포함하여 재무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심사기준을 활용해 1차 검토 진행

표 27. 동행 대출사업 심사기준표(안)

동행 대출사업 심사기준 (안)				
(※ 아래 각 항목별로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등 5단계 척도 평가 적용)				
상환가능성 (60점)		대안 신용평가 (40점)		특이사항 (추가평가)
항목	점수	항목	점수	
가계부채상태 평가	20점	대출의 효과성	10점	채무 발생 및 상환 이력
상환계획서 평가	5점	대출신청자의 소득 창출역량 평가	10점	
신청 용도의 구체성 및 적합성	10점	조합에서의 활동, 신뢰성	10점	
가계소득 안정성	10점	조합비, 공제회비 연체 이력	5점	
신용보고서를 통해 확인된 연체 이력	5점	추가자금 확보 가능성	5점	
신청자의 신용도 (NICE 정보 기준)	10점			

3. 약정 및 교육

가. 약정서

- 현재: 대출기간, 상환관리 등 기본 약정 내용으로 구성
- 개선안: 공익활동 중단 시 약정해지 특약 삽입
 - 대출자 중 공익활동을 중단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약정해지 요건이 됨을 약정서 내에 특약으로 삽입
 - 본 대출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대출이 실행되고 공익활동가의 공익활동의 지속성 제고라는 궁극적인 목적이 인지, 실현되도록 함

나. 교육내용

- 현재: 동행 및 대출사업 취지 안내, 기금 재원 및 성실 상환 안내 등으로 구성
- 개선안: 호혜금융 교육내용 강조, 재무관리 교육내용 추가
 - 약정 교육시 동행 대출사업이 시혜금융이 아니라 호혜금융이라는 점을 더욱 강조하여 진행
 - 금융 상담, 컨설팅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재무적인 교육 프로그램 편성 및 진행함. 이를 통해 공익활동가들의 재무, 신용상태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 재무적인 교육 내용은 대출 약정 교육 시 병행하여 진행 가능. 대출참여자들은 집체교육을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함
 - * 관련 기관 (롤링주빌리, 서민금융진흥원, 사회적 금융연구원 등)과 협약 추진하여 공익활동가에게 맞는 교육 및 안내자료 제작과 교육 진행

4. 사후 관리

가. 상환관리 (매월 납부되는 상환원리금에 대한 관리)

○ 현재: 월 1회 상환 안내 문자 발송

[동행 대출사업 상환관리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기연체(2회 이하) 발생 시 상환독촉 업무· 중기연체(3~6회) 시 소속단체에 상환독촉 안내문 발송 및 면담· 장기연체(7회 이상) 시 내용증명 발송· 장기연체(7회 이상) 시 법적 대응 <p>제23조[연체관리의 방법] 연체 관리는 문자, 이메일, 유선을 통해서 하되 필요한 경우 대출자 및 소속단체 책임자와의 면담 등을 병행한다.</p> <p>제25조[상환조정 및 상환유예]</p> <o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상환의지를 가졌음에도 정상적인 상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 대출자를 대상으로 월납 상환 원금과 이자, 상환기간 등 조건을 조정하는 것을 상환조정이라 하며, 또한 같은 사유로 일정기간 동안 대출자의 상환일정을 연기하는 것을 상환유예라 한다.② 연체 횟수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담당자 및 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상환조정 및 상환유예를 할 수 있다.③ 상환조정을 통해 공익활동가 긴급자금대출 사업 기간 이내에 현실적으로 납부 가능한 금액을 재조정할 수 있다.④ 상환유예는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실시하며, 회당 납입 원금에 대한 변화는 없으며, 상환 일정 자체가 해당 기간만큼 연기되는 것을 말하며, 최대 2회까지 상환유예를 부여할 수 있다.⑤ 상환조정 및 상환유예를 위한 면담 시에 대출자는 자필 상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 청년공익활동가 안전망 기금사업 운용규칙(2024) 참고

○ 개선안: 전담 인력 배정을 통한 밀착 관리, 도덕적 해이 등 (법적) 대응 조치

- 상환 관리에서 대출금 집행 후 1차 상환 여부는 향후 상환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최초 상환 안내 및 관리가 매우 중요함
- 대출 프로그램의 특성상 대출자 관리는 장기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전담 인력이 수시로 상환 관리를 하며 미납이 발생할 시 지체없이 대응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함
- 연체 횟수에 따라 각각 조치사항을 즉시, 동일하게 시행해야 대출이용자 또한 본 사업의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지하게 되고 이는 상환율 제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대출자가 자의적으로 후순위채권이라 판단하거나 갚지 않아도 되는 채무라 인식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환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대출 프로그램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어 사업의 지속가능성과도 연관되어 있음

- 따라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실제적인 판단과 지급명령 신청, 채무불이행 등록과 같은 단계에 맞는 법 조치까지의 실행이 필수적임
- 현 사무처의 대출관리 여력 등을 감안하여 최소 연 1회 이상 연체자 관리에 대한 특별 회의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가리고 독촉장 발송 이외에도 재산조사를 통한 재산 파악 후 가압류 설정, 지급명령 신청 등의 법 조치를 시행할 것 권고함
- (유사사례) 대표적인 민간 대출 사업 기관인 사회연대은행이나 신나는조합 또한 상환관리 시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 여부가 판단되면 해당 대출자에게 독촉장 발송을 통한 약정 이행 촉구와 이후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법적 대응함으로써 악성 채권을 관리하고 있으며 필요시 채무불이행자 등록 진행을 통해 금융 연체 이력을 남기기도 함

나. 부실관리

- 현재: 해당사항 없음
- 개선안: 채권조치방향 논의구조 마련, 대손 목표비율 설정 및 후속 조치
 - 개인회생 및 파산, 신용회복으로 인한 면책 확정 채권과 중증질환, 이민, 사망,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회수 불가능 채권, 경제 능력 상실자로 판단되어 관리종결이 필요한 채권 등 대출 프로그램을 지속할 경우 발생할 다양한 형태의 관리 종결이 필요한 채권의 조치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구조 마련이 필수적임
 - 동행 대출사업의 대손관리의 목표는 5%로 설정하여, 상환기간 종료 후 5% 미상환율을 달성할 때까지 상환 독려 및 재약정 등 상환 조치를 지속함. 단, 소액대출의 경우 출자금 보존이 중요하므로 대손관리 목표를 3%로 설정함
 - 일정 시점 (약정해지, 약정기간 종료 등) 이후에는 참여자별 상황을 분류하여, 채권관리위원회(가칭)의 의결을 통해 재약정 등 후속 절차 추진 필요. 재약정 후 성실 상환 시 이자 감면 조치
 - 장기연체자의 경우 제도권으로 유입시키는 방안도 검토. 연체자들은 동행의 대출금을 갚으려는 의지가 클 수 있으나,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필요시 채권 소멸을 위한 절차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함

다. 기타 금융안전망 지원

- 현재: 해당사항 없음
- 개선안: 홈페이지 금융 정보 게시, 채무조정 및 상담 연계
 - 동행 홈페이지에 공익활동가들을 위한 대출, 금융상담, 신용회복 정보 등을 게시하여 공익활동가들이 수시로 재정상태에 대해 자가 체크하고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함
 - 대출 채원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공익활동가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 및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연계 방안 마련
 - 대출 신청자 중 다중금융부채를 갖고 있는 경우, 관련 기관 정보를 제공하고 재무상담, 신용회복 프로세스를 우선 이용하도록 조치
 - ※ 대출 신청시에 상담결과를 제출하면 심사 시 가점을 주는 방식도 검토
 - 동행 대출 선정에서 제외된 조합원의 경우 다른 지원서비스 방안 검토

#2. 대출사업 운영체계 개선안 종합

표 28. 동행 대출사업 운영체계 개선방향 종합

구분		기존	개선안
서류 접수	신청서식	기본 인적사항, 신청용도, 부채, 상환계획 등	- 신청자 가계 월소득과 월지출 작성 추가
	제출서류 목록	신청서식 증빙자료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변경 - 개인신용보고서 추가
심사	사무처 서류검토	기본요건, 미비서류 보완	- 신청서류와 제출서류 동일여부 확인, 적합성 검토 - 재무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반영한 평가표 활용하여 1차 검토
	심사위원회	서류검토로 대출 여부 및 한도 결정 (100% 정성평가)	- 정량 및 정성평가 포함된 평가표로 서류심사 - 대면심사 추가
약정 및 교육	약정서	대출기간, 상환관리 등 기본 약정 내용으로 구성	- 특약 삽입 : 공익활동 중단으로 인한 조합원 자격 상실시 약정 해지 요건
	교육내용	조합, 기금, 상환 안내	- 호혜금융 교육내용 강조 - 재무관리 교육내용 추가
관리	상환관리	월 1회 상환 안내	- 전담 인력 배정을 통한 밀착 관리 - 도덕적 해이 등 (법적) 대응 조치
	부실관리	-	- 대손, 관리중단 채권 등 조치방향에 대한 논의 구조 마련 - 대손 목표비율 설정 및 후속조치
	기타 금융 안전망 지원	-	- 홈페이지 금융정보 게시 - 다중금융부채자에게 채무조정 및 상담 연계

제5장. 재원마련 및 성과관리 방안

1. 재원마련 방안

□ 동행의 대출 재원은 출자금, 출연금, 지원금, 차입금 등으로 구성

- 출자금은 조합원에게 반환해야 하는 자금으로 기본적으로 원금 보존을 목적으로 운용하나 상황에 따라 손실 감수 가능
- 출연금(기부금)은 공익활동가 금융지원 목적으로 출연된 자금으로, 사업의 고유한 목적 실현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순환 운용 가능
- 지원금 (지원사업비)는 특정한 공익목적 프로그램에 제공되는 사업비로 소멸성 자금이므로 자금 제공자와의 합의에 따라 상환 재원 활용 가능
- 차입금은 자금 제공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자금으로 원금 보존을 목적으로 운용

□ 동행 대출 재원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소액대출 확대를 위한 출자금 증액
 - 동행의 소액대출은 조합가입을 오래 유지한 조합원의 참여 사업으로 소속감 증대, 자조조직으로서의 지향을 추구할 수 있는 사업임. 소액대출은 특히 긴급생활 지원적 성격으로 조합원들이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규모 확대가 요구됨
 - 소액대출의 규모 확대를 위한 출자금 증액 캠페인을 전개함
 - * 일정 금액 이상의 출자금을 납부한 조합원들이 참여하도록 방향 검토함. 단, 소액대출 신청 시 출자금 증액 약정을 하고 소액대출 상환기간 내 월 분할납부로 해도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방안도 가능
- 적립형 공제 대출사업 추진
 - 앞에서 동행이 조합원 상호성에 기반한 공제 모델로 성장해 갈 것을 제안하며, 적립형 공제 도입으로 공제조직에 어울리는 대출사업으로서 적립형 공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음
 - 적립형 공제를 통해 조합원이 자금을 축적하고, 필요시 축적된 자금의 일부를 대출받음으로써 조합원 상호 간 긴급생활자금이나 목돈마련 지원 등으로 활용

□ 동행 재원의 관리방안 마련 필요

○ 중장년공익활동가 대출사업을 위한 자원 정리 및 확대방안 마련

- 동행은 ‘공공상생연대’ 출연금인 청년공익활동가 안전망기금으로 매년 4~5억원 정도의 순환대출구조를 확립시켰으나 중장년공익활동가 든든기금 대출사업은 안정적 기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임
- 현재 진행 중인 중장년공익활동가 든든기금과 목적출자금 및 추가 출연금 확보를 통해 중장년공익활동가 든든기금 대출사업의 순환대출 구조를 확립하도록 함

○ 동행 대출사업을 위한 외부기금 활용 원칙 마련

- 동행은 그동안 대출사업을 위해 차입금과 출연금을 활용했음. 차입금의 경우 원금 100% 상환, 추가 이자 부담, 대손부담을 차입금 제공기관과 협의하기 어려운 점 등 대출사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있었으며 출연금의 경우도 사업기간이나 대손분담비율 등에 사전 협의가 명확치 않을 경우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음
- 향후 출연금, 차입금 등 외부기금 확보 시 협의 기준 등을 마련하여 기금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기본 제안서를 마련하여 신규 기금 확대를 추진하는 등 동행의 조직적 목표와 추진 방안이 필요함

표 29. 동행 대출사업을 위한 외부기금 활용 시 협의 기준

기금 구분	협의 기준		
	사업기간	대손분담	비고
출연금	- 최대 10년 10년 이후는 동행 귀속	- 5년 이내 5% - 10년 후 10%	- 운영비 협의 필요
차입금	- 차입금 상환종료기간 - 사업기간 종료 합의	- 대손 분담금 협의 필요	- 기관 및 기금에 따라 달라짐 - 운영비 협의 필요
금융기관 차입(*)	- 차입금 상환종료기간	- 해당없음	- 이자 + 대손예상금을 별도 기부금으로 확보

2. 성과관리 방안

□ 동행의 대출프로그램 운영 원칙은 아래와 같음

- 동행의 대출프로그램은 공익활동가들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공익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창출하기 위한 지원사업임
- 대출프로그램에 참여한 공익활동가들이 상환한 금액을 다른 공익활동가들에게 재대출 함으로써 순환대출 구조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연대의식 및 상호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
- 사회적으로 낮은 급여 계층에 속하는 공익활동가들이 기존 금융권의 대출을 받기 어려운 조건에서 동행의 대출프로그램을 찾는 점을 고려하여 신청을 간소화하고 선정과정에서 상환능력 등의 재무적 가치뿐 아니라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주요하게 판단하여 진행함
- 대출금 상환 안내시 조합조직의 소속원으로서 관계와 신뢰, 공익활동가 스스로의 자존감을 지키도록 배려하는 것을 우선시하여 진행함

□ 동행 대출프로그램 운영원칙과 목적에 부합하는 평가항목으로 성과관리 추진

- 공익활동 영역의 유지 및 확대
 - 공익활동가에 대한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 제공
 - 공익활동가로서의 미래에 대한 안정감 향상
 - 공익활동가의 활동 지속가능성 창출
- 공익활동가의 자조성과 연대성 증대
 - 연대의식과 상호 책임성 향상
 - 대출 상환금으로 순환 대출 구조 구축
- 공익활동가의 특성에 부합하는 대출 추진
 - 대출 선정 과정에서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 판단
 - 대출 전체 과정에서 조합조직 소속원으로서 신뢰, 자존감 배려

□ 성과관리는 사업성과, 효과성, 프로그램 추진성과 영역으로 구분

- 사업성과는 대출 집행을 통해 실제 경제적 도움을 준 효과를 측정하는 것으로 긴급 생활자금 및 보증금 대출은 참여자 전체 평균금리 대비 저감 효과, 고이율전환대출은 참여자들의 실제 부담 금리 대비 저감 효과 등을 화폐화
- 효과성은 참여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대출 전후의 변화 정도를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나누어 측정
- 프로그램 추진 성과는 동행 대출사업의 추진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측정으로 자료 분석과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측정

#3. 대출프로그램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요소(안)

표 30. 동행 대출프로그램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요소

구분	항목	평가요소 (*)	평가방법
사업성과	경제적 가치 환산	금리 저감 효과	화폐화 계산
효과성	개인적 차원	공익활동 집중도	설문조사
		경제생활의 안정감 향상	
		심리적 스트레스 저감	
	사회적 차원	공익활동가 연대의식 향상	설문조사
공익활동가 소속감, 책임성 향상			
공익활동가 자존감 유지			
공익활동가로서 활동 지속			
프로그램 추진성과	순환대출 구조	상환비율 증가	자료 분석
	대출선정 기준	사회적 가치 판단 유지	
	프로그램 지속가능성	운영의 안정성 확보	
	참여자 만족도	사업추진 과정의 만족도	설문조사

* 평가요소에 따른 세부 평가기준, 설문내용 등은 각 대출프로그램의 특성에 맞게 구성

□ 효과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아래 사항 고려

- 대출프로그램 설계 시 평가요소, 평가항목, 평가시기 등을 명확히 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할 수 있도록 추진
- 대출프로그램별로 연단위 평가 진행 및 종료시점의 최종평가 진행
 - 팩트시트를 구성하여 분기별로 데이터 업데이트 관리
- 참여자들의 대출 전후 상황 변화 측정이 가능하도록 설문조사 및 FGI를 병행하여 평가 내용을 보완함

제6장. 결론

1. 동행 대출 프로그램의 성격

- 동행의 대출 프로그램은 외부자금(기부금)에 의한 소규모 무담보 대출서비스로 마이크로크레디트의 성격과 가장 유사함.
- 단, 협동조합으로서 공제 성격의 소액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마이크로크레디트와 공제회 성격을 동시에 지향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상품을 개발, 운영하도록 함

2. 대출 프로그램 개선 방향

가. 대출 프로그램 설계 개선 방향

- 자조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
 - 조합가입기간 최소 12개월 이상인 조합원에게 신청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조합과 조합원, 조합원 상호 신뢰 관계 바탕의 사업이라는 인식 증대
 - 성실 상환 시 금리 감면, 연체 시 동행의 다른 지원사업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정상 상환, 대출기금 선순환 구조 구축
- 실효성 강화
 - 학자금은 시중 1%대 저금리로 운영되므로, 학자금 대환을 대출용도에서 제외
 - 조합원들이 긴급한 생계비 발생 시 소액대출을 활용하도록 분기별 1회로 확대 실시하여 시의적절성 확보
- 대손 위험 저감 및 관리 강화
 - 1인당 평균 대출 규모를 최고 1,000만 원으로 낮추고 필요시 추가 대출하는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대손발생 등 집중 위험 감소
 - 대출 기준 금리를 최소 3%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시중금리와 격차를 줄여 조합원들의 제도권 금융 접근도 향상 및 동행 대출 프로그램의 운영비와 대위변제금 일부 확보
 - 대출 상환기간을 최대 36개월 이내로 축소하여 관리비용 절감 및 효율성 증대

나. 운영체제 개선 방향

○ 동행 대출사업의 정체성 강화

- 대출 후 공익활동 중단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할 경우 약정 해지
- 동행 대출사업의 취지가 호혜 금융이라는 인식 교육 강화
- 공익활동가 금융안전망 지원을 위해 금융 정보 제공, 채무조정 및 상담 연계, 재무교육 등 연계 강화

○ 대출의 적정성 평가 강화

- 조합원 가계 월 지출 확인, 개인 신용보고서 제출 등으로 상환가능성을 파악하여 정성적 신용정보와 상호보완적으로 대출 여부 및 적정 한도를 심사
- 정량과 정성 평가가 포함된 심사기준표를 통한 서류심사, 추가 대면 심사 단계를 거쳐 최종 대출자 선정

○ 대손 위험 저감 및 관리 강화

- 전담 인력 배정을 통한 상환안내, 연체안내 등 밀착 관리
- 도덕적 해이 발생(예상) 시 지급명령 신청, 재산조사,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대응 조치 시행
- 채권관리위원회 구성, 대손 목표비율 설정 및 후속 조치로 채권소멸을 위한 부실 관리 절차 시행

3. 대출 재원마련 및 성과관리 방향

가. 재원 확대 및 관리 방안

- 자조사업인 소액대출 규모 확대를 위한 출자금 증액
- 적립형 공제 대출사업 추진
- 중장년공익활동가 대출사업을 위한 재원정리 및 확대방안 마련
- 동행 대출사업을 위한 외부기금 활용 시 사업기간, 대손분담율 등을 반영하여 협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기본제안서를 통해 기금 확대 추진

나. 성과관리 방안

- 공익활동 영역의 유지 및 확대, 공익활동가의 자조성과 연대성 증대, 공익활동가의 특성에 부합하는 대출 추진 등 동행 대출프로그램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평가 항목 구성
- 성과관리는 사업성과, 효과성, 프로그램 추진성과 영역으로 구분하여 화폐화 계산, 설문조사, 자료 분석 등으로 통해 평가 진행
- 평가요소, 평가항목, 평가시기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참여자들의 대출 전후 상황 변화 측정이 가능한 방향으로 평가 보완

[붙임 1]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대출사업 대출심사 업무 매뉴얼

목 차

I. 공고 및 접수	70
1. 업무 개요	70
2. 업무 절차도	70
3. 세부업무 절차	70
1) 사업공고	70
2) 상담	70
3) 서류접수	71
II. 심사	72
1. 업무 개요	72
2. 업무 절차도	72
3. 세부업무 절차	72
1) 서류심사	72
2) 최종심사	72
*서류 관리	72
III. 약정 및 교육	75
1. 업무 개요	75
3. 세부업무 절차	75
1) 약정 체결, 교육	75
2) 대출 실행	76

I. 공고 및 접수

1. 업무 개요

- 목적 : 대출이 필요한 조합원 발굴
- 내용 : 공고, 상담, 접수

2. 업무 절차도



3. 세부업무 절차

1단계 사업공고	1. 홈페이지 공고 가. 동행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 나. 기금별 공고문, 지원신청서 등 양식 게시 다. 기금 소진 시 ‘선정완료’ 로 변경 라. 업무협조요청 : 홈페이지 게시 등 업무협조 요청 2. 기타 홍보 창구 가. 사업 안내 메일 발송 나. 사업 안내 문자 발송
2단계 상담	1. 방문 및 유선 상담 가. 기금대상 여부 확인, 기금안내 및 접수방법 안내 나. 지원신청서 작성법 및 구비서류 안내 다. 방문상담 요청 시 예약상담으로 진행 * 공고문의 내용을 기준으로 정보제공 위주의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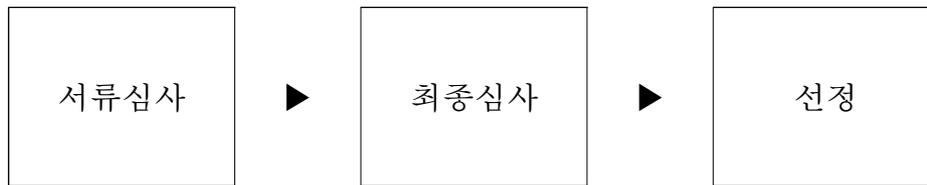
<p>3단계 서류접수</p>	<p>1. 온라인 접수 가. 서류접수 1) 접수대장 기록 나. 서류점검(미비서류, 자격요건 등) 1) 지원자 자격요건 확인 및 구비서류 확인 2) 지원신청서 기재 내용 확인 가. 접수 확인 문자 발송 1) 접수 확인 및 향후 심사일정 안내 2) 미비서류 있는 경우, 서류 보완 요청 *지원신청서의 접수는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함 *자격요건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접수 파일 스캔 후 폐기함 (지원자에게 안내 후, 요청이 있는 경우 반송)</p>

II. 심사

1. 업무 개요

- 목적 : 대출이 적합한 대상 조합원을 선정하고 관리함
- 내용 : 서류심사, 최종심사

2. 업무 절차도



3. 세부업무 절차

1단계 서류심사	<p>1. 서류심사</p> <p>가. 서류상 기재사항을 바탕으로 재무상태 및 상환가능성 검토</p> <p>나. 서류심사 기준은 서류심사 기준표를 참고하여 심사</p> <p>다. 과거 대출신청 이력 확인 (재신청의 경우, 신청제한기간 경과 여부 및 탈락사유 등 확인)</p> <p>라. 가계부채상태, 상환계획서, 용도적합성, 안정성, 신용도, 조합 활동성, 연체이력 등 (심사점수 80점 이상 적격)</p> <p>마.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심사 진행, 서류에 의문점 발견 시 신청자에게 유선 확인 또는 줌 실사 시 확인</p> <p>바. 결재선 : 담당→팀장</p> <p>사. 서류심사 결과통보 : 부적격자 문자로 통보(서류심사 3일 이내)</p> <p>* 적격자의 경우, 유선 합격안내</p>
2단계 최종심사	<p>1. 심사위원회 구성</p> <p>대출사업 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구성</p>

<p>2. 최종심사 계획보고</p> <p>가. 최종심사 일정 및 소요 예산 등 보고</p> <p>* 별첨: 제출서류, 서류심사 결과 보고</p> <p>나. 결재선 : 담당→팀장</p> <p>3. 최종심사 사전준비</p> <p>가. 심사 장소 섭외</p> <p>나. 심사자에게 심사자료 발송</p> <p>- 지원자 심사자료를 스캔하여 자료 발송 (대상서류 : 지원신청서, 서류심사표)</p> <p>- 자료 발송 시 지원자의 개인정보(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삭제 후 발송</p> <p>다. 최종심사표 및 지원자 심사자료 파일 준비</p> <p>라. 심사 당일 일정 제공지 및 심사장 세팅</p> <p>- 심사 당일 심사위원회에 일정 안내 문자 발송</p> <p>- 심사장 세팅 : 심사자료, 다과 등 준비</p> <p>1. 자금의 필요성 및 상환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최종 선정</p> <p>2. 평가항목 : 상환가능성(60점) 대안신용평가(40점)</p> <p>3. 확정</p> <p>가. 적격</p> <p>나. 부적격</p> <p>다. 조건부 적격(예시 : 감액, 상환기간 조정 등)</p> <p>5. 최종심사 결과보고 및 약정계획 보고</p> <p>가. 내부결재</p> <p>* 첨부파일: 최종심사표, 심사대상자 자료, 최종심사 결과보고 및 약정계획 보고 파일</p> <p>1) 결재선 : 담당→팀장→처장→상임이사</p> <p>2) 최종심사 결과보고 및 약정계획</p> <p>6. 부적격자 문자 통보</p> <p>7. 약정 대상자(최종심사 적격자) 약정일정 문자 안내 및 유선확인</p>
--

<p>서류관리 (부적격자 서류)</p>	<p>1. 부적격자 범위 가. 국세채납, 자산초과 등 지원대상이 아닌 자 나. 심사단계별 탈락자 다. 심사 중 포기자</p> <p>2. 원본 스캔 후 파일 보관 * 이후 지원 관련 내역 확인용</p> <p>3. 원본 폐기(반드시 파쇄)</p>
<p>서류관리 (중도 포기자)</p>	<p>1. 중도 포기자 범위 가. 약정 후 출금 전 포기자</p> <p>2. 원본 스캔 후 파일 보관 * 이후 지원 관련 내역 확인용</p> <p>3. 원본 폐기(반드시 파쇄)</p>

Ⅲ. 약정 및 교육

1. 업무 개요

- 목적 : 최종 선정된 대출자의 약정과 교육을 실시함
- 시기 : 최종 심사 후 20일 이내
- 대상 : 최종 선정된 대출자
- 내용 : 약정 체결, 기본교육, 대출 승인 및 실행

2. 세부업무 절차

약정 체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약정서 및 부속서류 준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약정 대상자별로 약정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정 대상자가 자필로 적는 부분을 제외하고 개인별 대출정보 입력하여 출력 2) 상환스케줄 출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승인 시 엑셀로 변환한 상환계획표 첨부 - ‘원금 및 이자상환계좌’ 번호 포함하여 출력 2. 약정체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금담당자가 약정서 조항 설명 및 약정체결(2부 작성) 2) 약정 체결 후 각 1통씩 보관 3. (대출금)출금안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출금 지급 시점 안내 2) 상환원리금 상환 방법 안내 4. 약정서 및 부속서류 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약정서 및 부속서류 개별 파일에 보관
약정 교육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약정 교육(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사말(10분) : 상임이사 또는 처장 2) 동행 및 대출사업 소개(10분)

	<p>3) 약정체결(10분)</p> <p>4) 상환 교육(10분)</p> <p>2. 담당자 및 장소 섭외</p> <p>3. 내부기안</p> <p>4. 약정 당일 대상자 최종 확인 안내 문자 발송</p> <p>- 약정자 지참 서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본인 명의)</p>
대출실행	<p>1. 지출결의 작성</p> <p>가. 내부기안</p> <p>나. 약정서류 일체, 상환계획표, 본인명의 통장 사본 첨부</p> <p>1) 결재선 : 담당→팀장→처장→상임이사</p> <p>다. 대출 이후 대출 관리 엑셀 파일에 개별 시트 생성 추가</p>

[붙임 2]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대출사업 상환관리업무 매뉴얼

목 차

I. 목적 및 적용대상	78
II. 상환안내 및 연체확인	78
III. 여신건전성 관리	80
IV. 부실채권 관리 프로세스	81
V. 부실채권 확인 및 조치	82
VI. 재산조사	83
VII. 시효관리	84
VIII. 상환관리	87
IX. 사후관리	89

I. 목적 및 적용대상

1. 목적

- 본 매뉴얼은 동행 대출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채권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연체대출금을 최소화하고 대출 상환율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 본 매뉴얼 적용대상은 동행 대출 사업을 통하여 대출을 받은 개인 및 기업에게 적용한다.

II. 상환 안내 및 연체 확인

1. 상환 안내

- **(개념)** 상환안내는 상환기일¹²⁾ 도래 전 상환일, 상환금액¹³⁾, 상환조건¹⁴⁾ 등의 대출거래약정 내용을 채무자에게 안내하는 것이다.
- **(시기)** 상환시작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최소 1회 이상 사전 안내한다. 단, 매월 원리금 분할상환의 경우 최초 상환 일정을 안내하고 이후 상환 안내를 생략할 수 있다.
- **(방법)** 사업 담당자는 유선, 문자, 메일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상환금액과 상환일, 상환계좌 등의 내용이 포함된 상환 안내문(공문형태포함)을 채무자에게 발송한다.

2. 연체확인

- **(원리금 입금 확인)** 사업 담당자는 매월 첫째 주에 상환일정표에 따른 대출 원리금 입금 여부를 확인하는 등 상환 관리를 해야 한다.

12) 채무자(대출 이용자)가 상환금을 입금 해야 하는 날짜

13) 상환스케줄에 따라 매월 발생하는 상환금액

14) 상환기간, 상환방식(원리금균등, 원금균등, 만기일시 등), 금리, 매월 상환일자, 상환계좌 등 약정서에 의거한 내용

(상환금액의 회계 처리순서) 채무자가 상환예정 원리금액을 납부하면 이자를 선 수취 후 잔액을 원금 상환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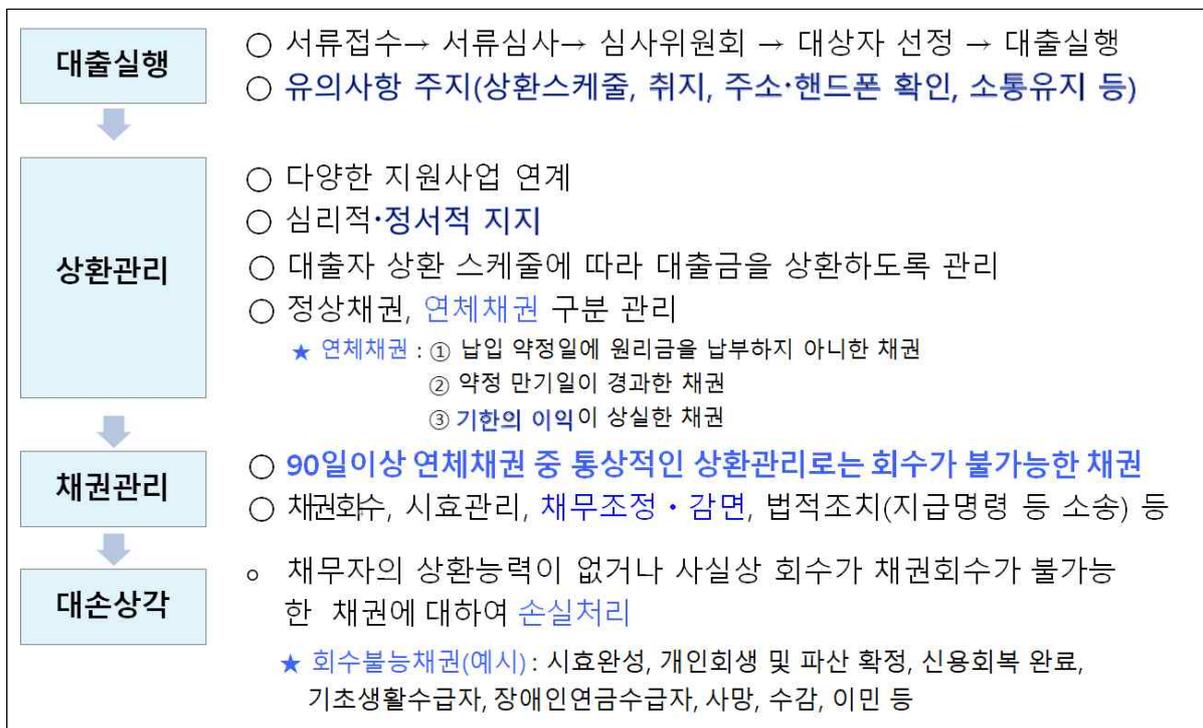
- (연체 안내) 원리금 연체가 발생하여 확인된 경우 사업 담당자는 해당 채무자에게 연체현황 및 상환 독려를 문자, 유선통화, 방문 등을 통해 안내하며 필요한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1단계) 5영업일 이상 연체 시 연체사유 확인 및 상환약속(예. 약속일자 지정)
→ 상환약속 불이행시 지속적인 상환촉구

(2단계) 연체 30일 초과 : 독촉장 우편발송 (내용: 연체금액, 연체기간, 상환독촉)

(3단계) 연체 90일 초과 : 최고장 내용우편 발송(내용: 기한의 이익 상실¹⁵⁾, 약정 해지로 인한 전액 상환해야함)

3. 기본 상환 관리 프로세스



15) 시기(始期) 또는 종기(終期)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 아직 법률행위의 효력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받는 이익

Ⅲ. 여신건전성 관리

1. 여신건전성 점검

○ 사업담당자는 담당 채권에 대해 매월 여신 건전성을 점검한다.

- 여신건전성 단계의 구분은 일차적으로 연체기간(원금, 이자, 원리금 포함)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연체 사유가 있을 경우 보고 및 승인 후 여신 건전성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No	구분	판단기준	
		재무상환능력	연체기간
1	정상	상환능력 양호	1개월 미만
2	요주의	상환능력 저하	1~3개월 미만
3	고정	상환능력 저하 및 채권회수 위험	3개월 이상
4	회수의문	상환능력 약화 및 채권회수 심각한 위험	3~12개월 미만
5	추정손실	상환능력 심각한 약화 및 회수불능	12개월 이상

부실
채권

2. 여신건전성 단계별 조치

○ 여신건전성 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No	구분	조치사항
1	정상	상환 안내
2	요주의	연체 사유 파악 및 상환 독려
3	고정	부실채권관리 프로세스 적용
4	회수의문	- 상환방안 협의, 상환기간 연장, 추가 신용 보완,
5	추정손실	재산조사, 채무불이행정보등록, 채권추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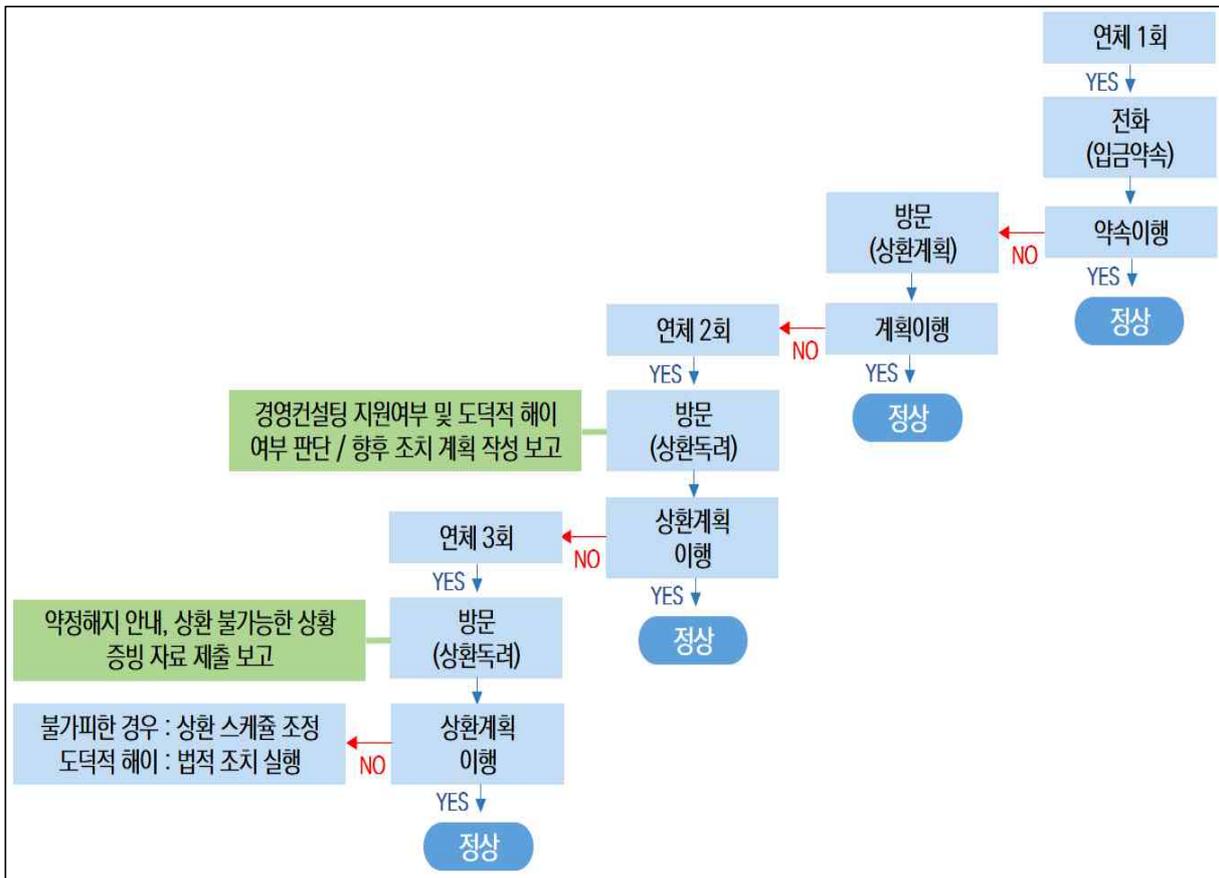
IV. 부실채권 관리 프로세스

1. 대상

- 여신건전성 분류에서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채권을 부실채권 관리 대상으로 한다.

2. 프로세스

- 부실채권 발생 확인 후 관리 프로세스



V. 부실채권 확인 및 조치

1. 부실채권 발생 확인 및 사유 조사

- 사업담당자는 부실채권 발생 시 채무자로부터 부실채권 현황, 연체 사유, 상환 방안의 내용을 서면으로 받고, 필요할 경우 대면 상담을 통하여 자세한 현황 파악한다.
- 사업담당자는 채무자의 연체 사유와 상환방안을 보고서를 통해 최종 보고한다.

2. 부실채권 조치 방향 설정

- 부실채권의 사유를 검토한 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비상식적 연체 사유가 없을 경우 상환 방안을 협의하여 상환 조건을 조정한다.
- 도덕적 해이, 상환방안 협의 거부, 도주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재산조사를 진행하거나 채무불이행 정보등록을 통지한다. 일정 재산이 있고, 채권 추심의 실익이 있을 경우 정당한 승인과 절차를 따라 채권 추심을 진행한다.

3. 상환방안 협의 및 조정

- 채무자와의 협의를 통한 상환방안 조정은 i) 채무 재조정(대출기간, 상환방법, 금리 등), ii) 추가 신용 보완(물적 인적 담보 제공 등) 등이 있다. 대출거래 약정 내용 중 달리 정한 바가 있거나 채무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다른 방안을 모색하여 협의할 수 있다.
- 채무자의 대출 상환능력이 불투명하여 원리금 감면조정을 통해 추가 회수 실익이 있는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종 담당자에게 보고한다.

VI. 재산조사

1. 목적

- 채무자가 정상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 재산이 없어서 상환을 못하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채권 회수를 위한 기초 조사

2. 대상

- 채무자 중 연체 사유가 비합리적이고 도덕적 해이가 있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상환 방안 협의를 거부한 자

3. 의뢰기관 : 신용정보주식회사

4. 필요서류

- ① 채권추심 위임증서 ② 채권추심 위임계약서 ③ 동행 사업자등록증
- ④ 동행 법인인감증명서 ⑤ 대출거래 약정서(차용증서)

5. 제공정보

- ① 기초정보 : 주소지 변동사항
- ② 신용정보 : 채무불이행(은행연합회), 금융질서문란자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채물불이행(신용정보사), 신용개설 정보, 신용조회처 내역
- ③ 재산정보 : 부동산 소유현황, 주소지 조사내용, 차량 소유현황, 유가증권 및 기타재산 정보

6. 비용 : 1건당 10만원 (추가 세부조사 의뢰 시 5만원 추가)

※ 주의사항

- i) 채무자가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은닉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채무자 모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음.
- ii) 향후 진행될 민사소송에서 채무자의 최근 주소지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므로 초본을 요구하여 보관함.

VII. 시효¹⁶⁾ 관리

1. 업무 개요

- 목적 :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권리행사권이 박탈됨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시점을 확인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시효를 중단 또는 연장시키는 일련의 업무
- 시기 : 최종상환일 기준 6개월 전 수시
- 대상 : 장기 연체자
- 내용
 - 시효완성
 - 시효중단(회생 및 파산, 시효완성 1개월 이내, 소송)
 - 시효연장
 - 종결예정
 - 일반관리

[소멸시효 종류 및 기간]

10년 : 민사채권,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

5년 : 상사채권 (※ 지급명령 등 소송에 의해 판결을 받을 경우 10년으로 연장)

3년 : 이자, 급료(급여, 임금), 사용료 등

1년 : 여관 음식점 오락장의 숙박료, 입장료, 의복침구류 사용료, 운동료, 창고임대료 등

[소멸시효 계산 및 관리]

- 상환종료일로부터 5년

- 최종상환일로부터 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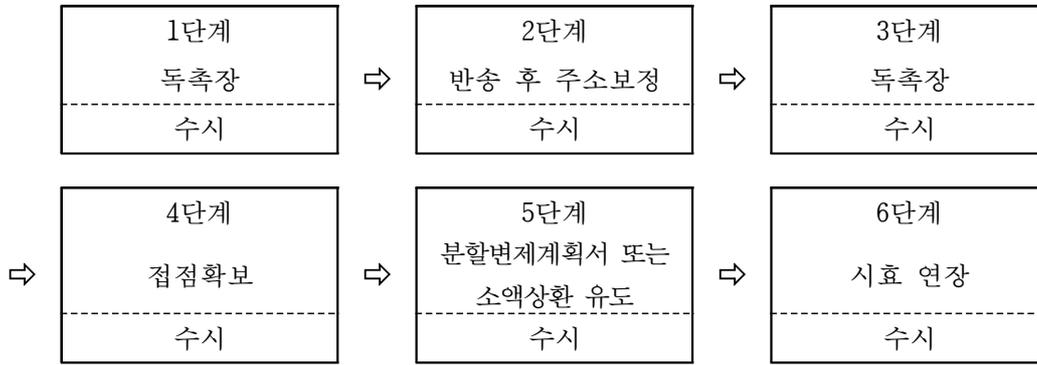
- 확정판결일로부터 10년 > 3가지 방법으로 계산한 날짜 중 가장 긴 날짜로 관리

2. 업무 절차도

가. 시효완성

- ▶ 개요 : 과거 시효관리 부재로 인해 최종상환일로부터 5년 초과자
- ▶ 방안 : 점점 확보 후 분할변제 계획서 및 소액 상환 유도
- ▶ 효과 : 최종 상환일 및 분할변제 계획서 확보일로부터 시효 5년 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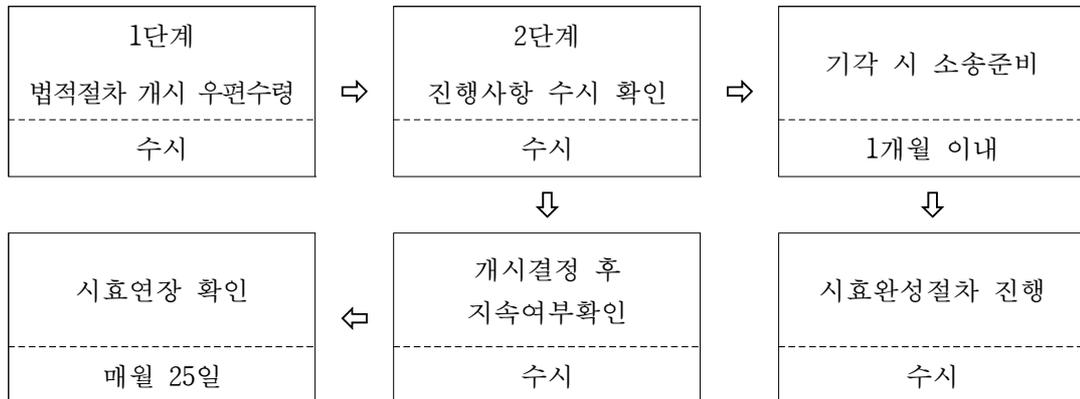
16) 어떤 사건이나 상태가 지속됨으로써 권리를 얻거나 잃게 되는 법률적인 기간



나. 시효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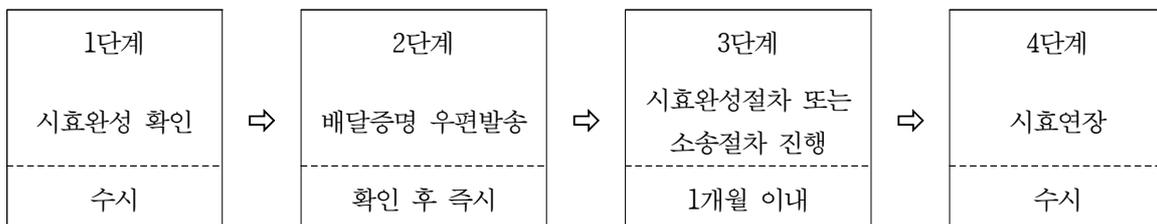
- ▶ 개요 : 회생, 파산, 소송 등의 법적절차 진행으로 시효 일시 중단
- ▶ 방안 : 법적절차 (청구, 가압류, 가처분, 채무승인) 진행사항 수시 확인
- ▶ 효과 : 시효중단 → 시효연장 또는 종결사항 확인 및 상환관리로 전환

1) 회생 및 파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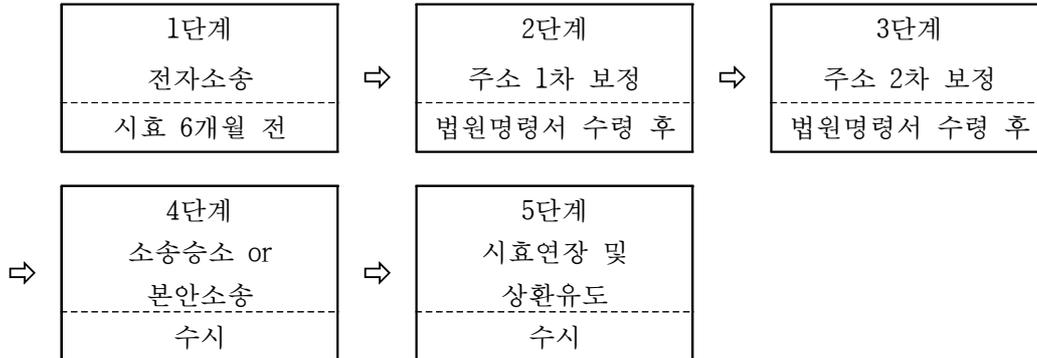
2) 시효 완성 1개월 이내

- ▶ 개요 : 시효관리 미흡으로 시효 완성 1개월 이내 자
- ▶ 방안 : 배달증명부 등기로 시효 6개월 연장
- ▶ 효과 : 시효 연장 후 소송 및 접점확보로 시효연장



3) 소송

- ▶ 개요 : 시효완성 6개월 이내자로서 점점 미확보자
- ▶ 방안 : 전자소송 진행
- ▶ 효과 : 소송 승소로 인해 시효 10년 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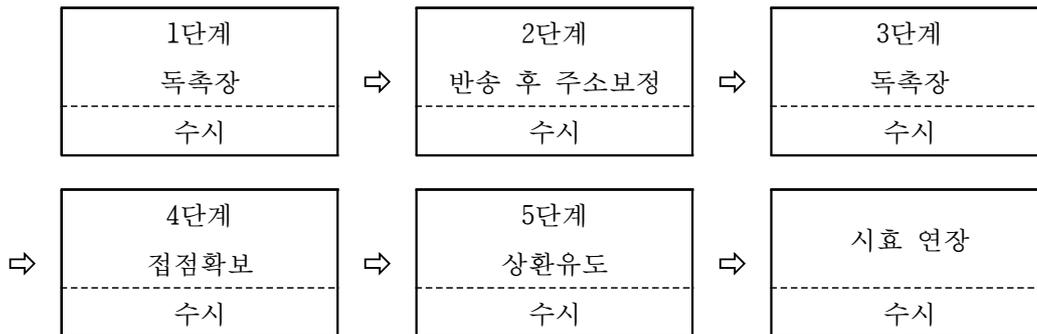


다. 시효연장

- ▶ 개요 : 상환, 소송승소, 분할변제계획서, 회생 등으로 시효연장
- ▶ 효과 : 상환 및 상환금액 상승 유도, 상환현황 확인 및 독촉

라. 일반관리

- ▶ 개요 : 시효완성 6개월 초과자로서 점점확보 및 상환가능자 발굴
- ▶ 방안 : 독촉장 및 주소보정으로 거주지 확인 및 점점확보
- ▶ 효과 : 상환가능성 높음



VIII. 상환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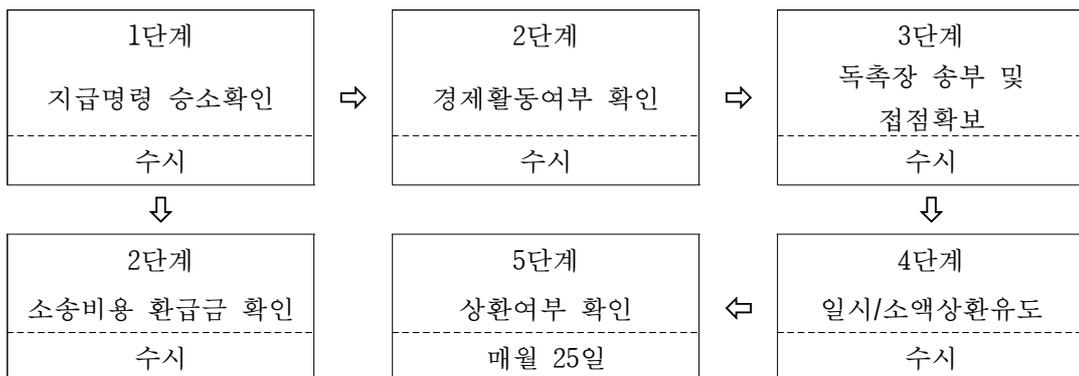
1. 업무 개요

- 목적 : 채권관리팀 대상자의 상환유무 파악 및 독촉관리
- 시기 : 수시 및 매달 첫째주
- 대상 : 소송 승소자, 소액 상환자, 회생 진행자
- 내용
 - 소송
 - 소액상환
 - 회생

2. 업무 절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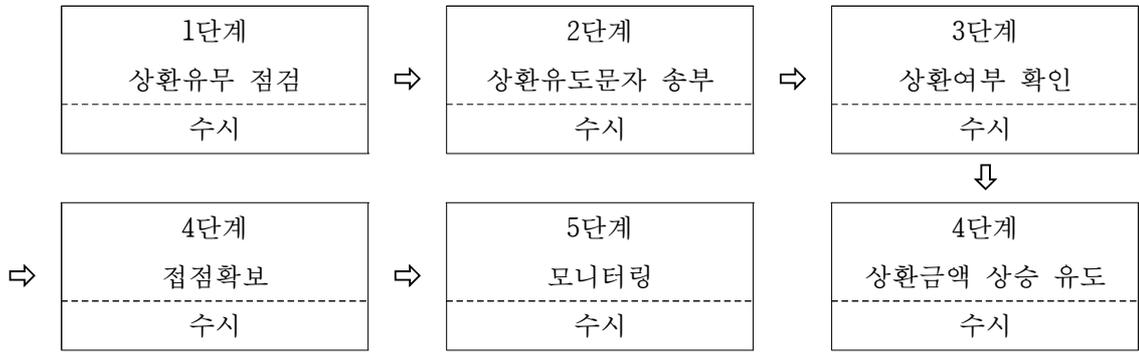
가. 소송

- ▶ 개요 : 소송 승소자에 대하여 접점 확보 후 상환유도 및 소송비용 환급
- ▶ 방안 : 지급명령 승소자 우선 진행
- ▶ 효과 : 소액상환 및 저당권 확보자에 대해 일시상환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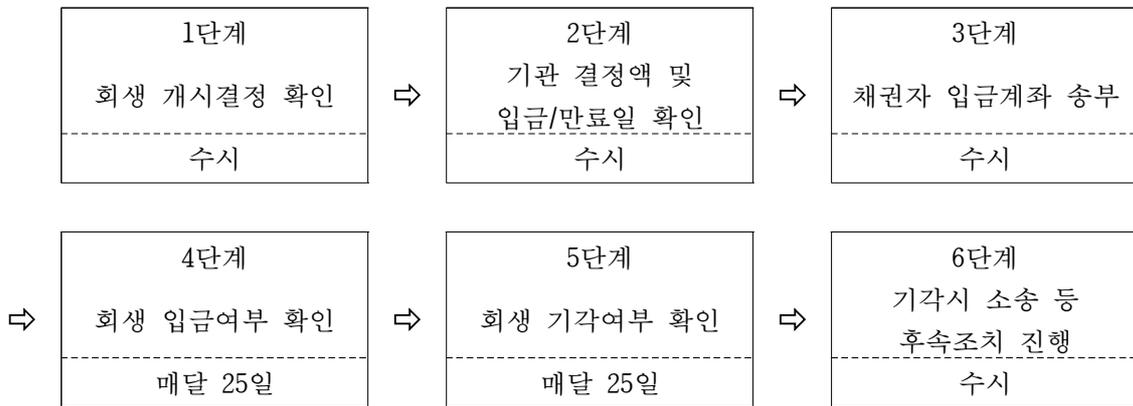
나. 상환

- ▶ 개요 : 소액 상환자 상환점검 및 금액 상승 유도
- ▶ 방안 : 매달 상환점검 및 약정 만료 후 남은 잔액에 대한 안내
- ▶ 효과 : 매달 예측가능한 상환액 확보 및 업체 운영사항 점검



다. 회생

- ▶ 개요 : 회생의 유지여부 확인
- ▶ 방안 : 매달 상환점검 및 기각 여부 확인
- ▶ 효과 : 예측가능한 상환금액 확인 및 기각 시 소송 진행



IX. 사후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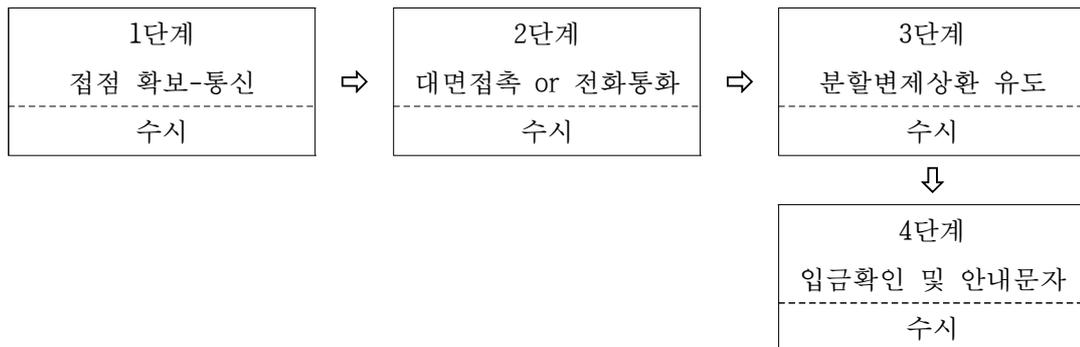
1. 업무 개요

- 목적 : 점점 확보자 상환유도 및 미확보자 점점 확보
- 시기 : 수시
- 내용
 - 점점 확보자 상환유도
 - 독촉장 송부에 의한 점점 확보
 - 소송 준비
 - 관리종결

2. 업무 절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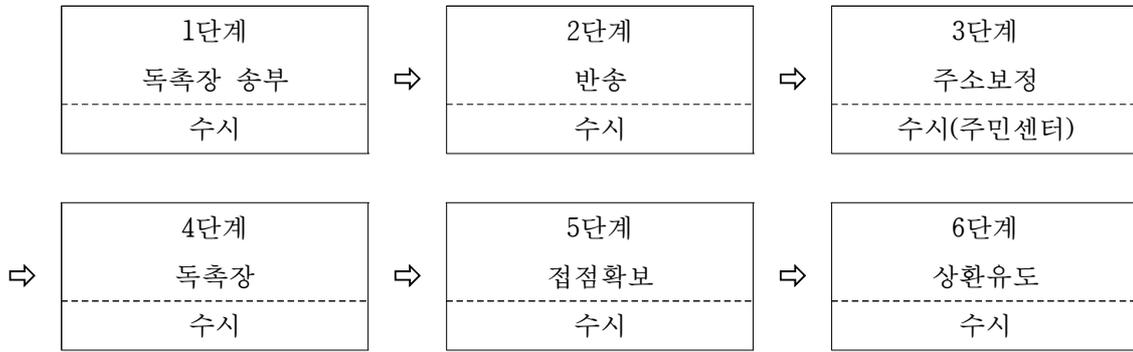
가. 점점 확보자 상환유도

- ▶ 개요 : 점점 확보자 분할변제계획서 및 상환유도, 지속적인 관리
- ▶ 방안 : 면담, 전화 등으로 지속적인 점점관리
- ▶ 효과 : 지속적인 점점관리를 통해 상환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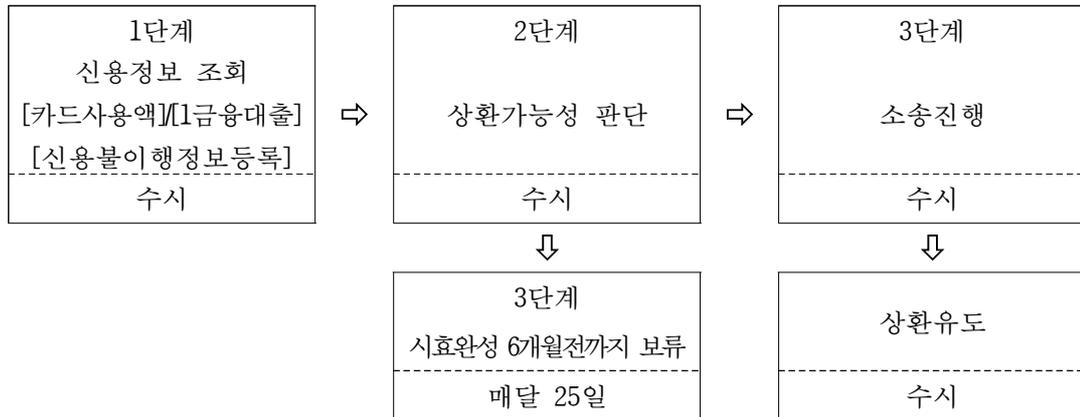
나. 독촉장 송부에 의한 점점확보

- ▶ 개요 : 우편발송을 통한 거주지 확인을 통하여 점점확보 및 상환유도
- ▶ 방안 : 반송우편, 약정서 및 대출원장을 활용한 주소 보정
- ▶ 효과 : 점점확보를 통한 상환 유도



다. 소송준비

- ▶ 개요 : 점점 미확보자에 대한 소송진행
- ▶ 방안 :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경제활동 유무 확인, 상환가능성 판단
- ▶ 효과 : 경제활동을 방해함으로써 상환유도



라. 관리종결

- ▶ 개요 :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채권에 대한 종결진행
- ▶ 방안 : 채권심의위원회 의결
- ▶ 대상
 - 개인회생 및 파산, 신용회복으로 인한 면책 확정 채권과 중증질환, 이민, 사망,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회수 불가능 채권
 - 경제능력 상실자로 판단되어 관리종결이 필요한 채권
 - 채무 원금잔액이 50만원 이하이고 장기간(최종상환일로부터 3년 이상) 연락 두절 채권
- ▶ 효과 :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사례들에 대해 관리를 종결하여 행정 및 관리비용에 대한 절감

[붙임 3]

동행 대출사업 규정 개정 방향

1. 동행 소액대출사업 규정 개정(안)

현행	개정(안)	개정 취지
<p>제5조 [대출신청]</p> <p>① 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소액대출 사업 신청서 (이하 “신청서” 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신용)정보 수집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u>주민등록등본</u> 1부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부 또는 건강보험 납입증명서 1부 - 재직증명서 1부 - 재직기관 추천서 1부 	<p>제5조 [대출신청]</p> <p>① 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소액대출 사업 신청서 (이하 “신청서” 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신용)정보 수집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u>주민등록초본</u> 1부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부 또는 건강보험 납입증명서 1부 - 재직증명서 1부 - 재직기관 추천서 1부 - <u>재직기관 등록증</u> 1부 - <u>부채잔액증명서</u> 1부 - <u>개인신용보고서</u> 1부 	<p>제5조</p> <p>① 수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신청자의 신용도를 검토할 수 있는 자료 추가
<p>제9조 [대출금액 및 조건]</p> <p><u>1인당 최고 1천만원</u>을 한도로 최대 36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을 조건으로 대출한다.</p>	<p>제9조 [대출금액 및 조건]</p> <p><u>1인당 최고 1천만원, 1회 신청시 최고 5백만원</u>을 한도로 최대 36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을 조건으로 대출한다.</p>	<p>제9조 수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액대출의 취지를 반영하여 1회 한도를 낮추고, 긴급상황 발생시 추가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
<p>제17조 [약정의 체결 및 지급]</p> <p>① 대출 승인자는 대출이 결정되면 조합이 정하는 기일에 약정서</p>	<p>제17조 [약정의 체결 및 지급]</p> <p>① 대출 승인자는 대출이 결정되면 조합이 정하는 기일에 약정서</p>	<p>제17조</p> <p>③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행 대출사업의

<p>를 구비하여 쌍방 간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p> <p>② 약정된 대출금 교부는 반드시 대출자 명의의 계좌로 이루어져야 한다.</p>	<p>를 구비하여 쌍방 간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p> <p>② 약정된 대출금 교부는 반드시 대출자 명의의 계좌로 이루어져야 한다.</p> <p>③ <u>약정 체결 시 성실한 상환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동행의 사업담당자는 대출 승인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u></p>	<p>호혜성에 대한 조합원 인식 강화가 필요하여, 교육실시 내용 추가</p>
<p>제26조 [대손충당금] 매 대출시 대출원금의 10분의 1 이상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한다.</p>	<p>제26조 [대손충당금] 매 대출시 대출원금의 <u>100분의 5 이상</u>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한다.</p>	<p>제26조 수정 - 동행의 대출사업 대손 목표비율을 5%로 정함</p>

2. 청년공익활동가 안전망 기금사업 운용규칙 개정(안)

현행	개정	개정 취지
<p>제5조 [대출대상]</p> <p>① 안전망기금 사업은 20세 이상 40세 미만의 청년공익활동가로서, 동행 조합원 가입이 <u>2개월 이상인 자</u>(신청일 기준)를 대상으로 한다.</p> <p>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시범사업 신청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각호 외의 조건 및 우선순위는 심사위원회가 정한다.</p> <p>1. 현재 급여가 연소득 3,600만원 이하 또는 건강보험료가 직전 3개</p>	<p>제5조 [대출대상]</p> <p>① 안전망기금 사업은 20세 이상 40세 미만의 청년공익활동가로서, 동행 조합원 가입이 <u>12개월 이상인 자</u>(신청일 기준)를 대상으로 한다. <u>단, 재원의 특성에 따라 사업설계 시 가입기간 조건은 변경할 수 있다.</u></p> <p>② 동일</p>	<p>제5조</p> <p>① 수정</p> <p>- 기존 대출 이용자들의 조합가입기간 평균이 최소 1년 6개월 이상인 점, 조합과 조합원의 신뢰관계가 정상 상황까지 연결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조합가입기간 상향 조정</p> <p>- 단, 재원의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항목 추가</p>

<p>월 월 평균 10만원 미만인 자</p> <p>2. 소속단체 추천</p> <p>③ <u>소액대출, 긴급자금시범대출자</u>는 중복 대출 신청대상이 가능하나 총 대출 한도는 2천만원 이내로 한다.</p>	<p>③ <u>소액대출 등 동행이 시행하는 다른 대출사업의 대출자</u>는 중복 대출 신청대상이 가능하나 총 대출 한도는 2천만원 이내로 한다.</p>	<p>③ 추가</p> <p>- 긴급자금시범대출은 현재 시행되는 대출사업명이 아니므로 ‘동행이 시행하는 다른 대출사업’으로 개정</p>
<p>제6조 [대출신청]</p> <p>① 청년공익활동가 안전망기금사업의 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대출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동행에 제출하여야 한다.</p> <p>- 개인(신용)정보 수집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p> <p>- <u>주민등록등본 1부</u></p> <p>- <u>원천징수영수증 1부 (→제출이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 납입증명서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u></p> <p>- 재직증명서 1부</p> <p>- 재직기관 추천서 1부</p> <p>- 학자금 상환의 경우 학자금 대출 잔액 증명서 1부</p>	<p>제6조 [대출신청]</p> <p>① 청년공익활동가 안전망기금사업의 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대출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동행에 제출하여야 한다.</p> <p>- 개인(신용)정보 수집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p> <p>- <u>주민등록초본 1부</u></p> <p>- <u>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부 또는 건강보험 납입증명서 1부</u></p> <p>- 재직증명서 1부</p> <p>- 재직기관 추천서 1부</p> <p>- <u>학자금 상환의 경우 학자금 대출 잔액 증명서 1부(삭제)</u></p> <p>- <u>재직기관 등록증 1부</u></p> <p>- <u>부채잔액증명서 1부</u></p> <p>- <u>개인신용보고서 1부</u></p>	<p>제6조</p> <p>① 수정</p> <p>- 대출신청자의 신용도를 검토할 수 있는 자료 추가</p> <p>- 기존 타 기관 학자금 대출이 저금리(1%대)인 점을 감안하여, 학자금 상환 대출은 동행 대출 용도에서 제외함</p>
<p>제11조 [청년공익활동가 안전망기금 사업 지원 내용]</p> <p>① 학자금대출, 긴급자금 등의 대출은 1인당 <u>최대 2천만원 한도</u>로 최대 <u>60개월</u> 원리금균상환을 조건으로 대출한다. 다만 대출금</p>	<p>제11조 [청년공익활동가 안전망기금 사업 지원 내용]</p> <p>① 긴급생활자금, 주거보증금, 고이율전환 등의 대출은 1인당 <u>최대 1천만원 한도</u>로 최대 <u>36개월</u> 원리금균상환을 조건으로 대출한</p>	<p>제11조</p> <p>① 수정</p> <p>- 대손발생 등 집중 위험 감소를 위해 사업당 대출 규모</p>

<p>액, 대출용도는 약정서에 명시하도록 한다.</p> <p>② 동행의 기존 대출사업의 대출자의 경우 중복 대출도 가능하나 전체 대출한도는 2천만원 이내로 한다.</p>	<p>다. 다만 대출금액, 대출용도는 약정서에 명시하도록 한다.</p> <p>② 동행의 기존 대출사업의 대출자의 경우 중복 대출도 가능하나 전체 대출한도는 2천만원 이내로 한다.(삭제)</p>	<p>를 낮추고 필요시 추가 대출하는 방식 적용</p> <p>② 삭제</p> <p>- 동 규칙 5조 ③항 내용과 중복</p>
<p>제12조 [대출이율 및 원리금 상환]</p> <p>① 대출금액에 대한 이율은 고정금리 <u>연 1%(십원미만 절사)</u>로 한다.</p> <p>② 연체 3개월 이후부터는 대출 원금에 대하여 <u>연 3%의 연체이자</u>를 부과한다.</p> <p>③ 대출금액의 원리금 상환과 관련하여 거치기간 없이 이자와 원금을 월별로 납부한다.</p>	<p>제12조 [대출이율 및 원리금 상환]</p> <p>① 대출금액에 대한 이율은 고정금리 <u>연 3%(십원미만 절사)</u>로 한다.</p> <p>② 연체 3개월 이후부터는 대출 원금에 대하여 <u>연 4.5%의 연체이자</u>를 부과한다.</p> <p>③ 대출금액의 원리금 상환과 관련하여 거치기간 없이 이자와 원금을 월별로 납부한다.</p>	<p>제12조</p> <p>① 수정</p> <p>- 향후 대위변제에 따른 대손충당금 사전 적립, 시중 금리와의 과도한 격차로 차후 제도권 금융 접근에 위험요소로 작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리 상향 조정</p> <p>② 수정</p> <p>- 기준금리 상향에 따라 연체이자율 상향 조정</p>
<p>제13조 [대출기간]</p> <p><u>대출기간은 최대 60개월로 한다. 본인 의사에 따라 24개월, 36개월, 48개월, 60개월을 약정할 수 있다.</u></p>	<p>제13조 [대출기간]</p> <p><u>대출기간은 최대 36개월 이내로 한다.</u></p>	<p>제13조 수정</p> <p>- 상환기간이 길면, 사업관리기간과 비용에 부담이 되는 점을 반영</p>
<p>제19조 [교육의 실시]</p> <p>① <u>대출결정 통보를 받은 대출 승인자가 사회연대은행과의 약정 체결 시 성실한 상환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동행의 사업담당자는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u></p>	<p>제19조 [교육의 실시]</p> <p>① <u>대출결정 통보를 받은 대출 승인자와 약정 체결 시 성실한 상환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동행의 사업담당자는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u></p>	<p>제19조</p> <p>① 수정</p> <p>- 사회연대은행과의 협약은 별도로 이뤄지므로 본 규칙에서 [사회연대은</p>

<p>② 교육내용은 동행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② 교육내용은 동행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행] 명칭 삭제</p>
<p>제20조 [약정의 체결 및 지급] ① 대출 승인자는 대출이 결정되면 사회연대은행이 정하는 기일에 약정서를 구비하여 쌍방 간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약정된 대출금 교부는 반드시 대출자 명의의 계좌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약정 체결 내용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사회연대은행의 규정에 따른다.</p>	<p>제20조 [약정의 체결 및 지급] ① 대출 승인자는 대출이 결정되면 조합이 정하는 기일에 약정서를 구비하여 쌍방 간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약정된 대출금 교부는 반드시 대출자 명의의 계좌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약정 체결 내용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사회연대은행의 규정에 따른다.(삭제)</p>	<p>제20조 ① 수정 - 사회연대은행과의 협약은 별도로 이뤄지므로 본 규칙에서 [사회연대은행] 명칭 삭제 ③ 삭제 - 위와 동일</p>
<p>제27조 [대출금의 반환] ① 동행이 제 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금 반환을 결정한 경우 대출자는 2주 이내에 대출금을 사회연대은행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대출자의 사정에 의한 약정 해지 시, 대출자는 사회연대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대출금 전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p>	<p>제27조 [대출금의 반환] ① 동행이 제 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금 반환을 결정한 경우 대출자는 2주 이내에 대출금을 조합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대출자의 사정에 의한 약정 해지 시, 대출자는 사회연대은행으로부터(삭제) 지급받은 대출금 전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p>	<p>제27조 ① 수정 - 위와 동일 ② 수정 - 위와 동일</p>
<p>제28조 [보고 및 기록] 동행은 시범사업 진행에 관하여 기록을 유지하며, 이사회에 분기별로 이를 보고한다.</p>	<p>제28조 [보고 및 기록] 동행은 안전망기금 사업 진행에 관하여 기록을 유지하며, 이사회에 분기별로(삭제) 이를 보고한다.</p>	<p>제28조 수정 - 사업명 수정 - 보고 시기를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분기별’ 삭제</p>
<p>제29조 [대손충당금] 매 대출시 대출원금의 10분의 1 이상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한다.</p>	<p>제29조 [대손충당금] 매 대출시 대출원금의 100분의 5 이상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한다.</p>	<p>제29조 수정 - 동행의 대출사업 대손 목표비율을 5%로 정함</p>